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결 산 검 사 의 건 서

수신 : 서대문구청장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결산검사 의견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검사기간 : 2020년 4월 6일 ~ 5월 4일(29일간)

○ 검사위원

- 대표검사위원 : 김 덕 현 (서대문구의회 의원)
- 검 사 위 원 : 김 광 선 (전직 공무원)
- 검 사 위 원 : 김 윤 (세 무 사)
- 검 사 위 원 : 김 두 수 (공인회계사)
- 검 사 위 원 : 심 준 용 (공인회계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결산검사위원

목 차

결산검사 의견서	1
I . 결산검사 경과	2
II . 결산검사 결과 총평	
1. 서대문구 재정의 개황	3
2. 세입·세출 결산	5
3. 기금의 결산	18
4. 재무제표의 결산	20
5. 성과보고서	32
6. 결산서 첨부서류의 결산	40
III . 개선 및 권고사항	
1. 전년도 권고사항 환류 진행상황	42
2. 당해연도 권고사항	45
3. 우수 사례	62
4. 【별첨】 부서별 전년도 권고사항 환류 결과	68

결 산 검 사 의 건 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

2020년 5월 4일

우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로부터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결산에 대한 감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20년 4월 6일부터 2020년 5월 4일까지(29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결산검사는 2019회계연도 서대문구의 결산서 및 부속서류가 지방회계법 등 관계 법령과 지침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서대문구 재정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여부에 대한 재무관련 회계검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의견으로는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2019회계연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검사한 결과, 세입·세출결산, 기금,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공유재산, 물품과 금고의 결산 내용을 지방회계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의견입니다. 단, 검사과정에서 나타난 집행내용상 개선 권고사항의 의견을 제시하니, 다음 회계연도 예산 운영과 결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결산감사위원

대표위원 김 덕 현

위 원 김 광 선

위 원 김 윤

위 원 김 두 수

위 원 심 준 용



I. 결산검사 경과

1. 검사기간 : 2020. 4. 6. ~ 5. 4.(29일간)

2. 결산검사위원

직 위	성 명	담 당 업 무	비 고
대표위원	김 덕 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결산	
위 원	김 광 선	세입·세출결산, 예산집행의 효율성	
	김 두 수	성과보고서, 세입·세출결산	
	김 윤	기금결산, 성인지결산	
	심 준 용	재무제표, 결산검사의견서 작성 총괄	

3. 결산검사 세부일정

구 분	일 자 별	결 산 검 사 내 용	비 고
구의회사무국	2020. 4. 6.	· 계산의 과오여부 및 부합여부, 실제수지와 수지명령 부합여부 · 재무운영의 합당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 심사 · 기금결산보고서, 재무제표, 성과 보고서 심사 · 성인지결산서 등 결산서 첨부서류 심사	
감 사 담 당 관			
주 민 자 치 국	2020. 4. 7. ~ 4. 8.		
기 획 재 정 국	2020. 4. 9. ~ 4. 10.		
복 지 문 화 국	2020. 4. 13. ~ 4. 16.		
환 경 도 시 국	2020. 4. 17. ~ 4. 21.		
안전건설교통국	2020. 4. 22. ~ 4. 24.		
도시재생추진단	2020. 4. 27.		
보 건 소	2020. 4. 28. ~ 4. 29.		
자연사박물관			
의견서 작성	2020. 5. 1. ~ 5. 4.	· 위원 토의 및 의견서 작성	

4. 결산검사 진행

- 결산검사는 관련 장부 및 증빙서 등을 검사하고, 필요시 관계 공무원의 출석답변 요구 및 현지 확인조사 실시
- 결산검사 자료는 대표위원을 통하여 자료요구
- 쟁점사항 위원 간 토의

II. 결산검사 결과 총평

1. 서대문구 재정의 개황

(1) 재정여건

최근 5년간의 세입·세출(기금의 수입지출) 및 결산상 잉여금 등 결산의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5년간 재정수입과 지출의 변동추이

(단위 : 천원)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총 계	세입(수입)	446,631,366	534,031,832	632,368,127	697,292,558	797,081,359
	세출(지출)	370,759,648	416,575,254	508,896,718	537,944,582	636,025,149
	결산상 잉여금	75,871,718	117,456,578	123,471,409	159,347,976	161,056,210
일반회계	세입	410,057,056	491,043,881	566,362,273	613,550,864	696,913,470
	세출	347,927,717	388,644,223	461,619,950	480,220,509	561,849,616
	결산상 잉여금	62,129,339	102,399,658	104,742,323	133,330,355	135,063,854
특별회계	세입	19,597,653	25,571,860	25,404,056	26,159,299	30,482,986
	세출	5,855,274	10,539,380	6,707,960	9,420,889	8,833,564
	결산상 잉여금	13,742,389	15,032,480	18,696,096	16,738,410	21,649,422
기 금	수입	16,976,657	17,416,091	40,601,798	57,582,395	69,684,903
	지출	16,976,657	17,391,651	40,568,808	48,303,184	65,341,969
	결산상 잉여금	-	24,440	32,990	9,279,211	4,342,934

2019회계연도 총 재정규모(기금 포함)는 전년 대비 세입 14.3%, 세출 18.2% 증가하였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재정규모는 5년 평균 10% 이상(세입 14.1%, 세출 12.8%)의 증가율을 나타냈으며, 기금의 규모는 2019년 신규 조성액에 의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총액을 주민수(309,397명)로 나눈 “1인당 재정지출규모”는 현년도에 1,815,950원으로, 전년 대비 280,007원 증가하였습니다.

전년대비 재무제표 요약분석

(단위 : 백만원)

구 분	재정상태			재정운영			비고
	총자산	총부채	순자산	총수익	총비용	운영차액	
2019	1,896,232	42,356	1,853,876	569,931	522,766	47,165	
2018	1,839,414	33,885	1,805,529	521,336	455,636	65,700	
증 감	56,818	8,471	48,347	48,595	67,130	(18,535)	

순자산은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등의 증가로 인하여 전년 대비 48,347백만원(2.7%) 증가하였으며, 재정운영결과인 운영차액은 사업순원가의 증가로 인하여 전년 대비 18,535백만원(28.2%) 감소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채무 추이

서대문구는 지방재정법 제87조의2,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제108조 등 관련 규정에 의해 갚아야 할 채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 세입 · 세출 결산

(1) 총괄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검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 · 세출결산 총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현 액	세입결산액(A)	세출결산액(B)	결산상 잉여금 (C = A - B)
합 계	686,451,113	727,396,456	570,683,180	156,713,276
일 반 회 계	656,350,540	696,913,470	561,849,616	135,063,854
특 별 회 계	30,100,573	30,482,986	8,833,564	21,649,422

(단위 : 천원)

회 계 별	현년도 채무상환	결산상 잉여금				
		명시	사고	계속비	보조금 반납금	순세계 잉여금
합 계	-	32,236,564	14,730,986	-	8,596,380	101,149,346
일 반 회 계	-	24,444,154	14,730,986	-	8,171,940	87,716,774
특 별 회 계	-	7,792,410	-	-	424,440	13,432,572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727,396,455천원으로 예산현액 686,451,113천원보다 40,945,342천원이 더 수납되었습니다. 세출결산액은 세입결산액의 78.4%인 570,683,180천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56,713,275천원입니다.

이 중 명시이월비 32,236,564천원, 사고이월비 14,730,986천원 및 보조금 반납금 8,596,380천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01,149,346천원입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대하여 그 내용을 모두 확인한 결과 적정하게 처리 되었으며 결산검사 결과 세계잉여금은 156,713,276천원임이 확인되었습니다.

(2) 일반회계

가. 세입

일반회계 세입결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결산액	656,350,540	723,277,754	696,913,470	1,894,423	24,469,861
결산확인액	656,350,540	723,277,754	696,913,470	1,894,423	24,469,861
차액	-	-	-	-	-

○ 세입결산 개요

수납액 696,913,470천원은 예산현액의 106.2%로서 40,562,930원이 초과수납 되었으며, 이는 주로 부동산 시가표준액의 상승, 재건축·재개발구역 분양에 따른 재산세 증가와 서울시 보통세 재원규모 증가에 따른 자치구 조정교부금 증가 및 국·시비보조금 증가에 기인 합니다.

○ 수납액

2019회계연도 수납액은 금고출납계산서상의 세입결산액과 부합 되었습니다.

본 연도 세입의 장부와 증빙서에 의한 결산확인액과 결산액은 일치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 원)

수납액	금고출납계산서 금액	차액
696,913,469,530	696,913,469,530	-

연도별 세입현황 분석

(단위 : 천원, %)

연도별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불납 결손액	예산 대비 징수 결정액	징수 결정액 대비 수납액	징수 결정액 대비 불납 결손액
2019	656,350,540	723,277,754	696,913,470	1,894,423	110.1	96.3	0.2
2018	574,226,933	639,839,661	613,550,864	1,205,677	111.4	95.9	0.2
증감	82,123,607	83,438,093	83,362,606	688,746	△1.3	0.4	0.0

2019회계연도에는 전년도 수납액 613,550,864천원보다 83,362,606천원이 많은 696,913,470천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불납결손액은 전년도 1,205,677천원보다 688,746천원이 증가한 1,894,423천원이고, 결손처분의 사유는 시효소멸 536,462천원, 무재산 48,789천원, 평가액 부족 348,512천원, 행방불명 690,488천원, 기타 270,172천원입니다.

세목별 세입 결산

(단위 : 천원)

세입과목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합계		656,350,540	723,277,754	696,913,470	1,894,423	24,469,861
지방세	소계	79,074,272	86,405,070	85,537,032	401,351	466,687
	등록면허세	7,771,272	8,723,830	8,681,876	38,378	3,576
	재산세	70,921,000	76,705,956	76,332,716	111,073	262,167
	지난년도수입	382,000	975,284	522,440	251,900	200,944
세외수입	소계	39,651,884	75,608,382	50,112,136	1,493,072	24,003,174
	국유재산임대료	20,760	20,880	20,880	-	-
	공유재산임대료	536,123	557,676	548,956	-	8,720
	도로사용료	1,948,800	1,871,897	1,784,544	-	87,353
	하천사용료	15,700	16,879	16,108	-	771
	입장료수입	1,720,808	2,254,275	2,254,275	-	-
	기타사용료	3,335,167	3,531,486	3,515,195	-	16,291

세입과목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세외수입	증지수입	726,080	728,170	728,170	-	-
	쓰레기처리비용투판매수입	6,660,000	7,469,325	7,469,325	-	-
	기타수수료	276,515	273,757	273,757	-	-
	주차요금수입	437,880	583,291	583,291	-	-
	의료사업수입	272,738	287,448	287,448	-	-
	기타사업수입	241,260	231,645	230,655	-	990
	징수교부금수입	10,686,557	11,686,350	11,686,350	-	-
	공공예금이자수입	1,517,000	2,962,906	2,962,906	-	-
	기타이자수입	3,800	36,156	36,156	-	-
	시·도유재산매각과속수입금	272,000	243,671	188,607	-	55,064
	공유재산매각수입금	2,306,000	6,145,685	6,087,356	-	58,329
	자치단체간부담금	427,902	427,902	427,902	-	-
	일반부담금	110,000	1,176,316	191,991	-	984,325
	과징금	99,284	86,303	80,323	-	5,980
	이행강제금	1,705,462	3,903,659	1,892,374	-	2,011,285
	변상금	275,100	291,500	149,339	-	142,161
	위약금	0	10,929	10,902	-	27
	과태료	556,890	1,675,631	1,154,086	-	521,545
	불용품매각대	20,000	143,037	143,037	-	-
	그외수입	2,835,774	4,533,284	4,404,183	-	129,101
	지난연도수입	2,644,284	24,458,324	2,984,020	1,493,072	19,981,232
지방교부세		15,071,000	17,494,922	17,494,922	-	-
조정교부금등		130,716,700	155,041,591	155,041,591	-	-
보조금		258,506,329	255,397,434	255,397,434	-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33,330,355	133,330,355	133,330,355	-	-

세입의 내용을 보면 지방세는 전체 세입의 12.3%인 85,537,032천원이 수납되었고, 세외수입은 전체 세입의 7.2%인 50,112,136천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체 세입의 2.5%인 17,494,922천원, 조정교부금등은 전체 세입의 22.2%인 155,041,591천원, 보조금은 전체 세입의 36.6%인 255,397,434천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나. 세출

일반회계 세출결산 확인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결산액	610,082,947	656,350,540	561,849,616	39,175,140	6,547,413	48,778,371
결산확인액	610,082,947	656,350,540	561,849,616	39,175,140	6,547,413	48,778,371
차액	-	-	-	-	-	-

○ 세출결산 개요

2019회계연도 예산액은 610,082,947천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46,267,593천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656,350,540천원이었고, 세출예산 전용액은 예산현액의 0.02%인 144,817천원이었으며 전용의 주요내용은 난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신속한 정상가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 확보 및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행 가이드라인 변경에 따른 사업 추진입니다.

이용은 없으며, 이체는 예산현액의 0.07%인 468,564천원으로서 2019. 1. 21.자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에 기인합니다.

예비비 사용액은 337,109천원으로서 신기한 놀이터 이용 어린이 안전을 위한 진·출입로 정비 소요비용 및 CCTV·비상벨 설치비용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2019회계연도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5.6%에 해당하는 561,849,616천원이었으며 이월액은 39,175,140천원으로서 그 가운데 명시이월액은 24,444,154천원이고 사고이월액은 14,730,986천원이며, 북아현문화체육센터 건립, 보훈회관 확장 추진 지연 등이 이월의 주요 원인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7.4%에 해당되는 48,778,371천원이었으며 집행잔액 발생의 주요사유는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 세출결산액

2019회계연도 세출결산액은 구금고의 2019년도 총수입 및 지출증명상의 세출결산액과 부합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 원)

지출액	금고출납계산서 금액	차액
561,849,616,440	561,849,616,440	-

세출결산서의 지출액은 금고출납계산서의 금액과 같았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

구분	2018 회계연도 지출액	2019회계연도			전년대비 증감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금액	비율
합 계	480,220,508	656,350,540	561,849,616	85.6	81,629,108	17.0
일반공공행정	49,898,131	46,505,759	39,300,420	84.5	△10,597,711	△21.2
공공질서및안전	1,500,783	1,880,166	1,780,868	94.7	280,085	18.7
교육	9,182,841	14,667,830	13,242,934	90.3	4,060,093	44.2
문화및관광	11,684,840	33,572,338	18,896,585	56.3	7,211,745	61.7
환경보호	27,498,281	37,912,370	32,600,960	86.0	5,102,679	18.6
사회복지	219,735,732	282,273,125	265,340,094	94.0	45,604,362	20.8
보건	11,964,844	19,380,389	16,908,781	87.2	4,943,937	41.3
농림해양수산	2,349,532	3,126,327	2,862,372	91.6	512,840	21.8
산업·중소기업	16,337,707	14,359,400	12,505,899	87.1	△3,831,808	△23.5
수송및교통	8,012,225	28,256,663	21,273,300	75.3	13,261,075	165.5
국토및지역개발	15,689,360	36,834,085	28,678,863	77.9	12,989,503	82.8
예비비	-	14,740,727	-	-	-	-
기타	106,366,232	122,841,361	108,458,540	88.3	2,092,308	2.0

본 회계연도의 기능별 지출액은 사회복지 265,340,094천원, 기타 108,458,540천원 등의 순이며, 전년대비 가장 많은 금액이 증가된 부문은 사회복지 45,604,362천원이며 증가 폭이 가장 큰 부문은 수송 및 교통으로 전년대비 165.5%가 증가하였습니다.

(3) 특별회계

가. 세입

특별회계 세입결산 확인

(단위 : 천원)

구분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특별회계 합계	30,100,573	38,577,017	30,482,986	49,859	8,044,172
주민소득지원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1,310,948	1,407,169	1,407,169	-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487,216	653,463	514,742	-	138,721
주차장특별회계	28,302,409	36,516,385	28,561,075	49,859	7,905,451
결산확인액	30,100,573	38,577,017	30,482,986	49,859	8,044,172
차액	-	-	-	-	-

○ 세입결산 개요

수납액 30,482,986천원은 예산현액의 101.3%로서 382,413천원이 초과수납 되었으며 이는 주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수입, 영천시장 지하주차장 조성사업 보조금 등에 기인하며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의 비율은 79.0%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3.1%가 높아졌습니다.

불납결손액은 49,859천원으로서 이는 납부의무자의 무재산에 기인하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20.9%인 8,044,172천원으로서 이는 주로 납세의지 결여 및 납세태만에 기인한 것입니다.

○ 세입결산액

세입결산액은 구금고 2019년도 총수입 및 지출증명상의 세입결산액과 부합되었습니다.

각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장부와 증빙서에 의한 각 회계의 결산확인액과 일치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 원)

수납액	금고출납계산서 금액	차액
30,482,986,230	30,482,986,230	-

각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서의 수납액은 금고출납계산서의 금액과 같았습니다.

나. 세출

특별회계 세출결산 확인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특별회계 합계	27,988,782	30,100,573	8,833,564	7,792,410	424,439	13,050,160
주민소득지원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1,310,948	1,310,948	449,800	-	-	861,148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487,216	487,216	423,226	-	63,987	3
주차장특별회계	26,190,618	28,302,409	7,960,538	7,792,410	360,452	12,189,009
결산확인액	27,988,782	30,100,573	8,833,564	7,792,410	424,439	13,050,160
차액	-	-	-	-	-	-

○ 세출결산 개요

2019회계연도 예산액은 27,988,782천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2,111,791천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30,100,573천원이었고 세출예산 이용 및 전용, 이체, 예비비의 사용은 없었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29.3%에 해당하는 8,833,564천원이었으며, 이월액은 7,792,410천원으로서 전액 명시이월로 영천시장(독립문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조성사업 지연에 기인합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43.4%에 해당되는 13,050,160천원이었으며, 집행잔액 발생의 주요사유는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 세출결산액

세출결산액은 구금고 2019년도 총수입 및 지출증명상의 세출결산액과 부합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 원)

지출액	금고출납계산서 금액	차액
8,833,564,060	8,833,564,060	-

세출결산서의 지출액은 금고출납계산서의 금액과 같았습니다.

(4)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본 연도의 계속비는 없으며,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결산

(단위 : 천 원)

회계구분	사 업 내 역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	비고
합 계		32,236,564	14,730,986	
일반회계	계	24,444,154	14,730,986	
	동청사 개보수	274,333	103,964	
	동행정운영경비 지원	8,500	-	
	방범용 CCTV 설치	1,679,873	-	
	홍제1동 복합청사 건립	-	428,416	
	남가좌2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500,000	-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	-	2,560	
	자치회관 시설개선 및 물품구매	66,000	358,125	
	충현동 자치회관 리모델링	-	606,728	
	학교 지원	360,000	-	
	마을연계 학교컨텐츠 지원	-	11,610	
	구정연구단 운영	37,213	-	
	공공근로사업	-	1,469	
	중소기업 육성지원	690,247	-	
	전통시장 활성화	81,000	-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97,500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12,000	90,368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	105,090	
	푸드트럭 특화거리 조성사업	-	132,470	
	보훈회관 확장	-	2,242,124	
	경로당 운영 지원	400,000	-	
	노인의료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10,000	-	
	어린이집 소규모 보수	-	43,123	
	은가어린이집 신축	243,000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균특)	540,000	-	
	다문화사회 통합 지원	-	79,000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	2,000	-	
	청소년센터(가재울) 건립	492,701	-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보수정비	942,258	76,401	
	문화재 방범·방재시설 설치	211,097	-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지원 (서울 옥천암 마애보살좌상 정밀실측)	-	24,000	

회계구분	사 업 내 역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	비고
일반회계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지원 (서울 구서대문형무소 망루 등 보수정비)	299,100	-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지원 (서울 구서대문형무소 배면경사로 정비)	-	245,219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지원 (서울 구서대문형무소 배수로 정비)	99,100	-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지원 (서울 독립문 기록화 사업)	-	66,884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지원 (서울 연세대학교 언더우드관 보수 사전설계)	-	12,862	
	시구 공동협력 시책사업 홍보 지원	2,000	-	
	북아현 문화체육센터 건립	6,819,708	3,308,877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실내 다목적 풋살장 조성	611,620	-	
	구립도서관 운영지원	-	60,000	
	북아현 및 가재울 뉴타운개발	150,000	13,354	
	주거환경 정비	-	153,368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시범사업	4,000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지원 시범사업 추진계획	12,094	-	
	신재생 에너지 보급과 원전하나줄이기 사업	-	213,213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확립	155,000	-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712,600	-	
	도로청소차량장비도입	-	224,274	
	부서 인력운영비	28,440	-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40,000	-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 정비	70,000	-	
	홍제1동 315-30-167-24간 도로개설공사	-	382,189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보상	92,216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개설 공사	-	821,050	
	홍은동 9-304~9-305간 도로개설공사	6,000	-	
	홍제2동 문화촌현대아파트주변 도로확장	59,231	-	
	홍은2동 379-2-332-1외 4개소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1,284,019	-	
	도로시설물 보수·보강공사	-	341,735	
	제설기능 유지	-	186,625	
	제설용역	-	136,989	
	자동응설 시스템 설치	-	87,000	
	여성안심귀갓길 보안등 LED개량공사	250,000	-	
	지방하천 및 하천시설물 정비	1,000,000	-	
	증가로32길 일원 하수관로 정비	1,000,000	-	
	창의 어린이놀이터 조성	16,000	-	
	자가발전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	656,801	43,199	
	숨은 땅 찾아 나무심기사업	-	168,992	

회계구분	사 업 내 역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	비고
일반회계	야호놀이터 조성	786,500	-	
	어린이보호구역시설물 정비	1,000,000	-	
	일상의 행복과 재미가 있는 도심 삶터, 천연 충현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	707,847	200,371	
	충정로 음식특화거리 조성사업	-	30,000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470,410	-	
	신촌 상권 활성화	-	34,980	
	청년문화 전진기기 조성 및 운영	-	5,510	
	신촌 중심가로 연계 강화	-	390,014	
	상권골목 개선사업	-	622,130	
	마을공간 개선사업	-	427,927	
	창업꿈터 2호점 조성	-	1,041,835	
	주거재생지역 리모델링 활성화 시범사업	-	58,212	
	홍제역세권 연계 인왕시장 일대 정비사업	-	186,500	
	소규모 재생사업	-	50,760	
	좌원상가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	30,855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776,814	-	
	치매센터 기능 보강 운영비	-	856,269	
	건강문화 앵커시설 「실벗누리」 조성(도시활력)	-	24,345	
	시설보완 등 환경개선	686,932	-	
주차장 특별회계	영천시장(독립문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조성	7,792,410	-	

검사결과 명시이월은 32,236,564천원, 사고이월은 14,730,986천원임이 확인되었습니다.

3. 기금의 결산

서대문구의 2019년도 기금 결산에 대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 원)

구 분	직전연도말 조성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조성액	사용액	
계	52,340,387	17,344,517	14,856,130	54,828,774
공용청사및시설건립기금 (구의회청사건립계정)	16,925,244	1,407,131	11,461,001	6,871,374
공용청사및시설건립기금 (동주민센터건립계정)	12,176,740	269,803	-	12,446,543
공용청사및시설건립기금 (교육및문화체육시설건립계정)	5,114,706	111,384	-	5,226,090
중소기업육성기금	3,225,352	1,556,298	2,001,840	2,779,810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1,281,873	158,625	118,659	1,321,839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536,474	11,582	11,000	537,056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489,279	10,551	23,000	476,830
성평등기금	1,144,846	24,837	29,316	1,140,367
난지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운영기금	5,162,441	108,234	370	5,270,305
난지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	-	-	-
옥외광고정비기금	446,088	611,471	380,229	677,330
도로굴착복구기금	957,452	672,196	579,376	1,050,272
지하개발및지하보행 네트워크조성기금	-	11,559,984	490	11,559,494
재난관리기금	3,814,135	757,234	140,211	4,431,158
식품진흥기금	1,065,756	85,187	110,638	1,040,306

검사 결과 서대문구의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2개 기금과
공용청사 및 시설건립기금 3개 기금(구의회청사 건립계정, 동주민센터
건립계정, 교육 및 문화·체육시설 건립계정)을 포함하여 총 15개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9회계연도말 조성액은 54,828,774천원이고, 2018회계연도말 조성액
은 52,340,387천원으로 2,488,387천원을 추가 조성하였습니다.

2019회계연도 사용액은 총 14,856,130천원이며,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계획 수립기준에 의해 조성하고 기금운용계획대로 집행하였습니다.

4. 재무제표의 결산

재무제표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고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 검토기준(이하 “검토기준”이라 함)」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은 재무제표를 대상으로 합니다.

(1) 재무제표 검토인의 적격성 확인

1) 재무제표 검토인의 자격요건 구비여부

- ① 재무제표 검토인이 검토기준 제6조【검토인의 자격등】에서 요구하는 자격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 ② 재무제표 검토인의 적격성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중경)의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회계 및 재무제표 검토」 보수교육과정 수료증을 징구하여 검토기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교육 등을 이수한 소속 공인회계사가 검토를 수행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소 속	등록번호	성명	수료일	비 고
정명회계법인 (대표이사 공인회계사 조상진)	9392	주병욱	2019년 12월 21일	이사
	12126	방기홍		
	13035	문진묵		이사

2) 재무제표 검토인의 독립적 검토업무 수행여부

- ① 검토기준 제5조【검토인의 선정원칙】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검토대상 업무 관련자 등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검토업무를 수행할 자격을 갖춘 검토인을 공정하게 선정하였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 ② 검토인이 업무수행과정에서 독립성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 ㉠ 검토대상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상 업무 관련자와 혈연 등 개인적 연고나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지 여부 : 부
- ㉡ 검토대상 기간의 직전 회계연도 종료일 전 2년 이내에 대상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상업무 등의 의사결정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 : 부

(2) 검토 절차의 적정성 확인

1) 검토보고서에 포함된 검토업무 범위 적정여부

- 검토기준 제10조【검토업무의 범위】에 따라 검토업무가 재무제표, 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 등 재무제표 전반에 걸쳐 적정하게 실시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 검토업무계약서 작성 여부

- 검토인과 지방자치단체가 검토업무의 조건을 사전에 합의하고 이를 포함한 검토업무계약서를 작성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3) 재무제표 검토계획 수립여부(징구한 확인서 참고)

- 검토기준 제15조【검토인의 검토계획 수립】과 제18조【검토절차 수립시 고려사항】에 따라 검토인이 검토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행정업무에 대한 것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결산, 회계실체, 보유자산 등 재무제표와 관련있는 사항들에 대하여 이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4) 재무제표 검토절차 준수여부(징구한 확인서 참고)

- 검토기준 제20조【재무제표의 검토절차와 고려사항】에 따라 검토인이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에 대하여 검토기준에서 요구하는 검토절차들을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재무제표 검토업무에 대한 확인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결산검사위원 귀하

이 확인서는 검토인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2019년12월31일로 종료되는 회계 연도의 재무제표를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 검토기준」에 따라 검토를 수행한 것과 관련하여 결산검사위원회에 제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재무제표 검토업무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실을 확인합니다.

확인사항	예	아니오
검토업무의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	
검토기준에서 요구하는 검토절차를 수행하였습니다.	✓	
검토증거에 대해 문서화를 수행하였습니다.	✓	
출납폐쇄기한 내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질문을 수행하였습니다.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558

정명회계법인

대표이사 조상진

2020년 3월 20일



검토업무 수행결과 보고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

우리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2019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검토를 수행하였으며, 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우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에 따라 본 검토의 목적에 합리적이라 판단되는 절차들을 적용하였습니다.

본 보고서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 검토기준 제 25조 제 4항'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재무제표를 검토하는데 필요한 업무수행절차 및 검토업무수행과정에서 발견된 회계처리, 재무회계 제도운영에 관한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는데 있습니다.

 정명회계법인

대표이사 공인회계사

조 상 진

조 상 진



5) 기초잔액 검증표 작성

-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의 자본항목 등 주요과목에 대하여 하기 양식에 따라, 기초잔액에 당기 증가·감소액을 반영한 금액이 기말잔액과 일치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또한, 전기말 잔액과 당기초 잔액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순자산 기초잔액 검증표〉

(단위 : 천원)

순자산	당해연도(2019년)				직전연도(2018년도)			
	고정 순자산	특정 순자산	일반 순자산	순자산 총액	고정 순자산	특정 순자산	일반 순자산	순자산 총액
기초잔액	1,574,650,141	56,961,362	173,917,667	1,805,529,170	1,565,415,333	41,278,855	148,113,027	1,754,807,215
증가금액	45,493,328	3,127,588	-	48,346,769	9,234,808	15,682,507	25,804,640	50,721,955
감소금액	-	-	274,147	-	-	-	-	-
기말잔액	1,620,143,469	60,088,950	173,643,520	1,853,875,939	1,574,650,141	56,961,362	173,917,667	1,805,529,170

6) 재무제표에 대한 분석적 검토

- 지방자치단체의 재무제표의 주요과목 중 당기 변동내역이 큰 과목에 대하여 개략적인 분석적 검토를 수행했습니다.

○ 재정상태표

(가) 자산

(단위 : 천원)

구 분	기초잔액 (2018년말)	당 기 중 증 감		기말잔액 (2019년말)
		증 가	감 소	
①유동자산	249,485,184	7,984,301	-	257,469,485
②일반유형자산	194,720,720	57,799,472	36,024,066	216,496,126
③주민편의시설	343,234,049	58,771,504	34,841,026	367,164,527
④사회기반시설	1,034,932,093	5,647,195	5,995,802	1,034,583,486
⑤기타비유동자산	6,014,424	5,077,413	1,934,158	9,157,679

- ① 유동자산: 단기성 재정자금의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7,984,301천원 (3.2%)이 증가하였습니다.
- ② 일반유형자산: 서대문구청 별관신축, 구의회청사 신축 등으로 전년 대비 21,775,406천원(11.2%)이 증가하였습니다.
- ③ 주민편의시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 남가좌2동 제2공영주차장 건립 등 주민편의시설의 증가로 전년 대비 23,930,478천원 (7.0%)이 증가하였습니다.
- ④ 사회기반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감가상각으로 전년 대비 348,607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 ⑤ 기타비유동자산: 세입세출외 장기보관현금의 예치 등으로 전년 대비 3,143,255천원(52.3%) 증가하였습니다.

(나) 부채

(단위 : 천원)

구 분	기초잔액 (2018년)	당 기 중 증 감		기말잔액 (2019년)
		증 가	감 소	
① 유동부채	18,597,498	625,335,629	622,380,814	21,552,313
② 기타비유동부채	15,287,778	8,653,025	3,136,631	20,804,172

① 유동부채: 국·시도비 보조금 반납예정액의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2,954,815천원(15.9%) 증가하였습니다.

② 기타비유동부채: 퇴직급여충당부채 및 임대보증금 등의 증가로 전년 대비 5,516,394천원(36.1%)이 증가하였습니다.

○ 재정운영표(기능별)

(단위 : 천원)

구 분	전기 (2018년)	당 기 중 증 감		당기 (2019년)
		증 가	감 소	
① 사업순원가	121,457,410	16,355,214	-	137,812,624
② 관리운영비	117,079,429	2,767,721	-	119,847,150
③ 비배분수익	38,885,052	-	10,583,835	28,301,217
④ 수 익	274,289,510	13,774,794	-	288,064,304

① 사업순원가: 사회복지, 문화 및 관광원가 등의 증가로 전년 대비 16,355,214천원(13.5%)이 증가하였습니다.

② 관리운영비: 인건비 등의 증가로 전년 대비 2,767,721천원(2.4%)이 증가하였습니다.

③ 비배분수익: 자체조달 수익 등의 증가로 전년 대비 10,583,835천원 (27.2%)이 감소하였습니다.

④ 수익: 정부간 이전수익 등의 증가로 전년 대비 13,774,794천원 (5.0%)이 증가하였습니다.

○ 순자산변동표

(단위 : 천원)

구 분	기초잔액 (2018년말)	당 기 중 증 감		기말잔액 (2019년말)
		증 가	감 소	
① 재정운영 결과	(65,700,018)	-	(18,534,532)	(47,165,486)
② 순자산	1,805,529,170	48,346,769	-	1,853,875,939

① 재정운영결과: 일반회계 등의 증가로 전년 대비 18,534,532천원 (28.2%)이 감소하였고, 재정운영순원가(240,898,818천원)에서 수익 (288,064,304천원)을 차감한 재정운영결과는 47,165,486천원(수익)입니다.

② 순자산: 사회기반시설 등의 시설투자액 증가 및 재정운영결과로 인하여 전년 대비 48,346,769천원(2.7%)이 증가하였습니다.

7) 주요과목에 대한 차이조정 수행

-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의 주요과목에 대하여 재무회계와 예산회계의 차이를 개략적인 조정표를 작성한 후 기타 차이내역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차이에 대한 명세서

(단위 : 천원)

구분	해당연도(2019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내부거래	합계
I. 2019 회계연도의 세출액	561,849,616	8,833,564	14,856,130	(13,728,921)	571,810,389
II. 세출 조정사항	(34,610,784)	(1,262,910)	(13,170,877)	-	(49,044,571)
1. 자금유출이 없는 비용	20,285,444	1,223,941	290,124	-	21,799,509
자산처분손실	364,283	26,127	-	-	390,410
자산손상차손	9,717	6,269	-	-	15,986
감가상각비	11,875,397	1,143,655	137,338	-	13,156,390
대손상각비	2,094,208	1,384	152,786	-	2,248,378
퇴직급여	4,272,032	25,593	-	-	4,297,625
기타 자금유출이 없는 비용	1,669,807	20,913	-	-	1,690,720
발생주의 기간비용 조정사항	-	-	-	-	-
2. 자산취득으로인한자금유출액	(46,404,116)	(2,344,861)	(13,461,001)	-	(62,209,978)
판매용 부동산 등 취득	(653,961)	-	-	-	(653,961)
장·단기대여금 대여	(38,420)	(449,800)	(2,000,000)	-	(2,488,220)
일반유형자산 취득	(11,676,483)	(192,425)	(11,461,001)	-	(23,329,909)
주민편의시설 취득	(30,074,836)	(1,702,636)	-	-	(31,777,472)
사회기반시설 취득	(2,903,432)	-	-	-	(2,903,432)
기타자산취득으로 인한 자금유출	(1,056,984)	-	-	-	(1,056,984)
3. 부채상환으로인한자금유출액	(8,492,113)	(141,990)	-	-	(8,634,103)
차입부채 상환	-	-	-	-	-
보조금반납금 부채 상환	(6,340,809)	(81,826)	-	-	(6,422,635)
퇴자금 지급	(2,142,936)	(60,164)	-	-	(2,203,100)
기타 부채상환으로 인한 자금유출	(8,368)	-	-	-	(8,368)
4. 순자산 감소로 인한 자금 유출액	-	-	-	-	-
자본잉여금 반납	-	-	-	-	-
5. 기금예치로 인한 자금 유출액	-	-	-	-	-
기금예치금의 적립	-	-	-	-	-
III. 성질별재정운영표의비용(I+II)	527,238,832	7,570,654	1,685,253	(13,728,921)	(522,765,818)

구분	해당연도(2019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내부거래	합계
IV. 2019 회계연도의 세입액	696,913,469	30,482,986	69,684,904	(13,728,921)	783,352,438
V. 세입조정사항	(142,393,416)	(17,507,568)	(53,520,151)	-	(213,421,135)
1.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및 이월금	(133,330,355)	(16,738,410)	(52,340,387)	-	(202,409,152)
2. 자금유입이 없는 수익	12,959,433	26,416	268,096	-	13,253,945
장수결정액과 수납액의 차이	1,220,853	(39,673)	235,813	-	1,416,993
자산처분이익	11,590,673	6	-	-	11,590,679
대손충당금환입	1,033	46,474	1,380	-	48,887
퇴직급여충당부채환입	-	-	-	-	-
자산손상차손환입	-	-	-	-	-
기타 자금유입이 없는 수익	-	-	-	-	-
발생주의 기간수익 조정사항	146,874	19,609	30,903	-	197,386
3. 자산처분으로 인한 자금 유입액	(13,850,554)	(25)	(1,447,860)	-	(15,298,439)
재고자산 판매	(7,469,325)	-	-	-	(7,469,325)
장·단기 대여금 회수	-	-	(1,447,860)	-	(1,447,860)
일반유형자산 처분	(6,087,356)	-	-	-	(6,087,356)
기타자산처분으로 인한 자금유입	(293,873)	(25)	-	-	(293,898)
4. 부채증가로 인한 자금유입액	(8,171,939)	(795,548)	-	-	(8,967,487)
차입부채 증가	-	-	-	-	-
보조금반납금 부채 증가	(8,171,939)	(795,548)	-	-	(8,967,487)
기타부채증가로 인한 자금유입	-	-	-	-	-
5. 순자산증가로 인한 자금유입액	-	-	-	-	-
자본잉여금 수입	-	-	-	-	-
VI. 성질별재정운영표의수익(IV+V)	554,520,053	12,975,418	16,164,753	(13,728,921)	569,931,303
VII 재정운영표의재정운영결과(III-IV)	(27,281,221)	(5,404,764)	(14,479,500)	-	(47,165,485)

8) 검토증거에 대한 문서화 수행여부(징구한 확인서 참고)

- 검토인이 검토보고서 작성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증거에 관한 사항과 검토기준 제17조[검토증거의 문서화]에 의하여 검토업무가

수행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문서화 하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9) 출납폐쇄기한 내 발생한 사건에 대한 질문 수행여부(징구한 확인서 참고)

- 검토기준 제23조[출납폐쇄기한 내 발생한사건]에 의하여 검토인이 출납폐쇄기한내 발생한 자금의 출납이외의 거래로서 재무제표에 공시하거나 재무제표를 수정할 사항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 등을 수행하였는지 확인했습니다.

10) 검토업무 수행시기에 대한 준수여부

- 검토기준 제23조[검토업무의 시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공인회계사의 검토업무를 위하여 출납폐쇄기한 경과후 60일 이내에 재무제표 등 결산에 관련된 서류를 검토인에게 제출하였고, 검토인은 결산검사위원회 개최 7일전까지 검토를 완료하였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3) 검토결과 권고에 대한 후속조치 확인

1) 수정방안 및 개선대안 제시여부 (징구한 검토용역 수행결과 보고서 참고)

- 검토기준 제25조[검토보고서의 보고사항]에 의하여 검토인이 검토과정에서 발견된 회계처리, 재무회계 제도운영에 관한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하고 수정방안 및 개선대안을 권고하였는지 확인했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장의 후속조치 수행여부(징구한 검토용역 수행결과 보고서 참고)

- 검토인이 제출한 검토용역 수행결과 보고서를 확인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4) 검토보고서 확인과 중요한 후속사건의 고려

1) 검토보고서 형식의 적정여부

- ①검토기준 제25조[검토보고서의 보고사항]에 의해서 검토보고서에 검토범위에 포함되는 모든 재무제표가 첨부되어 있으며 필요한 주석사항 및 필수보충정보는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 ②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보고서에는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이 배열순서에 따라 적절하게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2) 검토보고서일의 적정성 여부

- 검토인의 책임은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하여 제출한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하는 것이므로 검토보고서일(2020.03.11.)이 지방자치단체가 재무제표를 제출한 일자(2020.03.04.)보다 빠를 수는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3) 중요한 후속사건의 고려

- 2019회계연도 재정상태표 상 자산·부채 또한 출납폐쇄기한 및 출납폐쇄기한 내 회계처리의 예외의 경우 2020년 1월 20일까지 발생한 거래를 반영한 수치로 표시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5) 재무제표에 대한 추가 검사사항

- 재무제표 결산검사의견 형성에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유의미한 추가 검사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5. 성과보고서

서대문구에서는 「지방재정법」 제5조 제2항 및 제44조의2 제1항, 「지방회계법」 제15조 및 제16조 제4항,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에 따라 2019회계연도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서대문구는 2019회계연도의 ‘서대문! 미래를 품다’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 ‘비전 - 전략목표(10개) - 정책사업목표(55) - 단위사업(143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55개의 정책사업목표와 143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성과 및 정책사업 현황 총괄입니다.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 개, %)

실국명	성과목표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달성도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비율	달성	비율	미달성	비율
계	10	55	143	13	9.1	94	65.7	36	25.2
감사담당관	1	1	3	-	-	-	-	3	100.0
주민자치국	1	8	22	2	9.0	13	59.1	7	31.8
기획재정국	1	7	19	2	10.5	14	73.7	3	15.8
복지문화국	1	14	32	3	9.4	23	71.9	6	18.8
환경도시국	1	6	18	1	5.6	12	66.7	5	27.8
안전건설교통국	1	10	24	4	16.7	15	62.5	5	20.8
도시재생추진단	1	2	7	0	0.0	5	71.4	2	28.6
의회사무국	1	1	4	1	25.0	1	25.0	2	50.0
보건소	1	5	11	0	0.0	9	81.8	2	18.2
자연사박물관	1	1	3	0	0.0	2	66.7	1	33.3

※초과달성 : 목표대비 130% 이상, 달성 : 목표대비 100~130% 미만, 미달성 : 목표대비 100% 미만

서대문구의 정책사업 현황에 따른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정책사업 목표 143개 지표 중 초과달성 13개(9.1%), 달성 94개(65.7%), 미달성 36개(25.2%) 지표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의 성과달성도에 대한 비교현황입니다.

(단위 : 개, %)

실국명	2019년				2018년				달성률 증감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달성률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달성률	
계	143	107	36	74.8	134	103	31	76.9	-2.1
감사담당관	3	-	3	-	3	2	1	66.7	-66.7
주민자치국	22	15	7	68.2	23	15	8	65.2	3.0
기획재정국	19	16	3	84.2	18	14	4	77.8	6.4
복지문화국	32	26	6	81.3	24	20	4	83.3	-2.0
환경도시국	18	13	5	72.2	18	13	5	72.2	-
안전건설교통국	24	19	5	79.2	26	20	6	76.9	2.3
도시재생추진단	7	5	2	71.4	4	2	2	50.0	21.4
의회사무국	4	2	2	50.0	5	5	-	100.0	-50.0
보건소	11	9	2	81.8	10	9	1	90.0	-8.2
자연사박물관	3	2	1	66.7	3	3	-	100.0	-33.3

서대문구의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143개 지표 중 13개가 초과달성(9.1%)하였고, 94개가 달성(65.7%)하였으며, 36개가 미달성(25.2%)하여 전체 목표 대비 달성률은 총 74.8%입니다. 이는 2018년도 달성률 76.9% 대비하여 2.1% 감소한 것입니다.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지침에 따르면 사업목적과 명확히 연계된 결과지향적 지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뢰성 제고를 위해 충실한 성과분석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초과달성한 지표 중에는 아동청소년과의 ‘아동권리교육 참석자 수’에 대한 지표가 목표 대비 367%를 달성하여 가장 높은 달성률을 나타내었습니다.

동 지표의 경우 2019년에 새로이 설정한 목표로 지역아동센터 교사 및 종사자 등 관련 업무 종사자의 참여를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성과지표 설정의 좋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적 산출에 아동을 합산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는 그 목적 및 교육방법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권리교육의 형태를 관련 업무종사자를 위한 교육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교육으로 구분하여 목표 설정 및 실적 산출을 세분화할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의회 사무국의 ‘언론매체 홍보실적’ 지표는 홍보팀 신설 및 전담인력 채용 등으로 목표 대비 256%의 실적을 나타냈습니다. 다만, 해당 지표의 경우 다양한 언론매체에 보도자료를 제공한 회수를 실적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홍보의 목적은 수요자에게 정보를 실질적으로 전달하는 것이므로, 홍보실적 지표와 관련해 보도자료 제공회수만이 아닌 제공회수 대비 실제 기사화된 회수의 비율 등 홍보의 목적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추가할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홍보과의 ‘연간 블로그 콘텐츠 게재건수 집계’ 및 ‘연간 DID, 전광판 홍보건수 집계’ 지표에 대해서도 지표 설정방식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해당 홍보의 목표 대상이 되는 수요자에게 도달하는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외에 전산정보과의 ‘인프라 확충이행률’ 지표는 동 사업에 대한 보조금 추가교부와 CCTV 설치대수의 증가로 217%의 높은 실적을 나타내었으며, 일자리경제과의 ‘노동권익보호’ 지표는 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터의 인근 지역 중·고등학교 대상 노동인권교육 진행으로 인하여 목표 대비 205%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한편, 민원여권과의 성과지표인 ‘민원처리건수’ (107%), ‘가족관계등록

민원처리건수’ (93%) 및 ‘여권발급건수’ (93%) 지표의 경우 실제 민원 신청이 있어야만 처리가 가능한 것이므로 민원 신청건수를 구청에서 통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성과지표로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보다 실질적인 성과지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과지표 달성률이 90% 이하인 성과지표 중에서 구의회사무국의 ‘회의록 발간’ (89%) 및 ‘의원 입법활동 지원을 위한 자치법규 입안 및 검토’ (68%)의 경우 구의회 개최 회수와 의원의 입안회수에 의하여 실적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구의회사무국이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성과지표로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해당 지표 대신 정례회, 임시회 및 자치법규 입안 및 검토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별도로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부서별 성과지표 143개 중 목표를 달성한 지표가 총 107개(74.8%)로 우수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성과 지표에 대해서도 각 부서별로 그 원인을 파악하고 차년도 개선방안을 도출함으로써 합리적인 환류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각 부서가 실질적 통제가 가능한 합리적인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적극적인 관리를 통하여 보다 발전적인 구의 행정을 실현할 것을 권고합니다.

□. 부서별 성과지표 및 달성 현황

- 목표대비 초과달성 현황 (110% 이상)

부서명	정책사업 목표명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달성률 (%)	초과달성 및 미달성 사유
행정지원과	합리적인 조직관리를 통해 활기찬 조직 분위기를 창출한다.	직원 직무능력 향상 교육실적	2,100	2,676	127	계획 2,100명, 실적 2,676명 (직무분야 전문교육 역량강화교육 실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한 유연근무제	300	330	110	계획 300명, 실적 330명 (1회 이상 유연근무제 참여 직원 수)
자치행정과	지역주민과 소통 강화로 활기찬 주민자치를 실현한다.	마을공동체만들기 사업 추진실적	100	125	125	계획 55건, 추진 69건 (마을공동체사업 공모 선정 건수)
전산정보과	전자정부 인프라 확충 및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지향한다.	인프라 확충 이행률	100	217	217	계획 343대, 완료 747대 (보조금 추가교부, CCTV 설치대수 증가)
교육지원과	주민중심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 참여비율	100	177	177	계획 3,000명, 실적 5,317명 (교육부 공모 국비에산 확보로 사업 확장 및 시민대학 등 평생교육사업 참여자 증가)
		학습·일 연계 건수	100	125	125	계획 40건, 실적 50건 (세로골목사업을 통한 결과물을 강의에 활용, 50개 과정운영 및 483명 참여)
기획예산과	우리구 정책추진 방향을 수립하고 기획과 평가의 환류체계를 구축한다.	규제개혁 추진 이행률	100	119.6	120	계획 159회, 실적 96회 (직원교육, 무료전문가 상담실 및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등)
		생활경제 활성화 추진 준수율	100	110	110	계획 21회, 실적 23회 (전통시장 시설·경영 현대화, 명절 직거래장터 운영에 의한 물가 안정 도모 등)
일자리경제과	좋은 일자리 연계로 고용복지증진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노동권익보호	3,500	7,203	205	계획 3,500명, 실적 7,203명 (근로자복지센터가 없는 인근지역 중·고등학교 대상 노동인권교육을 진행하여 목표 초과달성)
세무2과	세입목표 초과달성을 통해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킨다.	체납처분 징수 진도율	100	132.9	133	목표 3,978백만원, 징수 5,287백만원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체납징수 활동, 2020년도 목표액 상향 조정 설정)
		세목별 세입 징수 진도율	100	109.9	110	목표 119,873백만원 징수 131,808백만원

부서명	정책사업 목표명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달성률 (%)	초과달성 및 미달성 사유
복지정책과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더불어 잘사는 복지공동체를 구현한다.	복지 수혜 가구 수 향상	1,400	2,340	167	계획 1,400가구, 실적 2,340가구 (관악구 탈북모자 사망사건 이후 대대적인 사각지대 발굴로 복지 수혜가구 급증)
		복지대상자 서비스 연계 향상	23,000	33,932	147	계획 23,000건, 실적 33,932건 (관악구 탈북모자 사망사건 이후 대대적인 사각지대 발굴로 사례관리 대상자 서비스 연계 급증)
아동청소년과	아동이 행복한 도시, 서대문 구현	아동권리교육 참석자 수	180	662	367	목표 180명, 실적 662명 (인형극 형태의 새로운 권리교육 실시 및 아동양육시설 교육 추가 실시로 대상아동 증가)
환경과	맑고 정온한 저탄소 녹색생활 도시 조성	공사장 오염물질 배출업소 점검실적	100	161	161	계획 225건, 실적 363건 (수시점검에 따른 점검실적 증가)
건설관리과	불법광고물 근절 및 가로환경 정비를 통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서대문 거리환경을 조성한다.	광고물 정비 추진률	100	142	142	목표 100,000건, 정비 142,275건 (아파트 분양, 재건축, 재개발 등에 따른 홍보용 불법현수막 급증으로 목표 초과)
안전치수과	재난관리 대응체계 확립으로 구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	안전체험캠프 운영실적	100	140	140	계획 10회, 실행 14회 (재난안전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여 신청 학교 수요 증가)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100	135	135	계획 600가구, 실행 810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재난취약계층의 신청 증가)
푸른도시과	산림재해 예방 및 산림환경개선으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도시숲을 구현	산림재해 방지 및 관리	18	34	188	목표 18개소, 정비 34개소 (등산로 정비사업 및 산림위험시설 정비 국·시비 예산확보에 따른 증대)
구의회사무국	의회를 운영하고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언론매체 홍보실적	263	672	256	목표 263건, 실적 672건 (홍보팀 신설 및 전담인력 채용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초과달성)

- 목표대비 미달성(90% 이하)

부서명	정책사업 목표명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달성률 (%)	초과달성 및 미달성 사유
감사담당관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신뢰행정을 구현한다.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평가 결과	120	100	83	목표등급 A(120), 종합등급 B(100) (전년대비 정성분야 노력도에 대한 평가 제외, 신분조치 성과, 개선요구 등 실적지표가 평균점수보다 낮음)
		시민감사옴부즈만 조치요구 건수에 대한 부서 수용률	90	81.3	90	수용 7.32건, 조치요구 9건 (조치의견에 대한 부서 불수용 1건, 부서 일부수용 2건으로 부서 수용률 감소)
홍보과	구청 홍보활동 활성화를 통해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한다.	연간 블로그 콘텐츠 게재건수 집계	707	601	85	게재 계획 707건 게재 건수 601건 (인스타그램 개설로 홍보채널이 다양화되어 홍보실적 분산으로 블로그 게재건수 감소)
		연간 DID, 전광판 홍보건수 집계	824	713	87	계획 824건 홍보건수 713건 (IPTV 운영 라이선스 유효기간 만료(2018.8.) 이후 대체 홍보수단으로 DVD 설치운영 (2019.2.), 각 부서 등 홍보 요청건수 감소)
전산정보과	전자정부 인프라 확충 및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지향한다.	대민정보서비스 이용률	105	80	76	계획 12건, 실적 6건 (전부서 GIS 데이터분석시스템 업무적용 인식 부족에 따른 업무분석 요청사례 발굴 어려움)
교육지원과	주민중심 평생학습 활성화	학습공간 발굴비율	100	78	78	목표 50개소, 실적 39개소 (50개 프로그램 중 같은 공간에서 진행된 일부 과정이 있어 39개 공간에서 사업 추진으로 저조)
재무과	체계적인 재산관리 및 공정 투명한 회계처리를 통해 재무행정의 효율성 제고	신속집행을 위한 조기발주 추진	85	73.1	86	발주대상 156건, 발주 114건 (계획변경 등의 사유로 일부사업의 발주가 연기되어 집행실적 저조)
아동청소년과	아동이 행복한 도시, 서대문 구현	아동급식 지원 수혜인원	1,150	960	83	목표 1,150명, 실적 960명 (전체 아동수 감소로 수혜인원 감소)
문화체육과	지역의 역사성과 문화적 가치를 활용한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지역 문화예술행사 지원 및 문화인프라 확충을 통한 문화도시 서대문 구현	문화시설 예산 집행률	92	73	79	집행액 801백만원, 예산액 1,097백만원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추모 조형물 건립사업비 282,480천원 미집행)
	다양한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생활체육대회 개최, 체육시설 확충 및 개선을 통한 건강도시 서대문 구현	체육시설 예산 집행률	90	49	54	집행액 9,817백만원, 예산액 20,116백만원 (북아현문화체육센터가 장기계속사업으로 공사비 등을 이월(10,128백만원)하여 2020. 9월 준공에 맞춰 집행 예정)

부서명	정책사업 목표명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달성률 (%)	초과달성 및 미달성 사유
주택과	이웃과 소통하는 공동체 아파트 만들기 및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무허가건물 정비 및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율	92	80	87	부과 2,258회, 징수 1,823회 (이행강제금 체납(435건) 발생으로 징수율 저조)
환경과	맑고 정온한 저탄소 녹색생활 도시 조성	신재생에너지 설치건수	1,350	856	63	계획 1,350건, 설치 856건 (유아, 초·중등, 성인대상 환경교육 등)
청 소 행정과	청결한 자원순환 도시환경 조성으로 깨끗한 서대문구 구현	생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1	0.89	89	전년도 폐기물량 66,527톤, '19년 폐기물량 65,942톤 (북아현 뉴타운 입주 등 대규모 인구 유입으로 폐기물 증가)
안 전 치수과	깨끗한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및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노후 불량 하수시설물 정비	하수맨홀 점검실적	100	81	81	계획 2,000개소, 실적 1,621개소 (재개발, 재건축 구역 내 소멸 및 소멸대상 점검 제외로 물량 감소)
교 통 관리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편리한 선진교통 문화조성	주차나눔, 공유주차 건수	750	513	68	목표 750건, 참여 513건 (참여인원 목표 설정대비 참여인원 부족)
도 시 재생과	권역별 도시재생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 및 상권 활성화로 균형있는 도시발전을 이룬다.	홍제홍은 도시재생 활성화 추진실적	9	0	0	희망지 사업 모두가 도시관리과(도시환경정비팀)로 이관되어 사업추진 불가
		가좌 도시재생 활성화 추진실적	10	8	80	계획 10회, 실적 8회 (주민 자부담 발생 및 정해진 예산으로 도시재생 사례 탐방 횟수가 한정적임)
구의회 사무국	의회를 운영하고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회의록 발간	9	8	89	목표 9회, 실적 8회 (2019년 정례회 임시회 회기 횟수가 총 8회였으나 회의록 적기발간 연간 횟수 목표를 9회로 설정)
		의원 입법활동 지원을 위한 자치법규 입안 및 검토	66	45	68	목표 66건, 실적 45건 (의원 자치법규 입안 및 검토 요청 수 감소로 미달성)
자연사 박물관	다양한 콘텐츠 운영 및 체계적 관리를 통해 박물관 운영을 활성화한다.	목표인원 달성률	100	85	85	목표 338,458명, 실적 289,031명 (서울시립과학관 및 타 자치구 소재 어린이박물관, 식물원 등 개관으로 관람인원 감소)

6. 결산서 첨부서류의 결산

(1) 채권

채권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발생액	당해연도 상환소멸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합계	11,768,246	4,352,392	4,019,297	12,101,341
일반회계	6,630,815	123,848	393,334	6,361,329
특별회계	1,303,351	752,267	673,576	1,382,042
기 금	3,834,080	3,476,277	2,952,387	4,357,970

검사 결과 채권의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2,101,341천원으로 확인되었으며, 세부내역은 보증금채권 943,908천원, 융자금채권 11,144,395천원, 미수금채권 13,038천원입니다.

(2) 채무

검사결과 채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3) 공유재산

본 년도의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증	감	
합계		1,302,861,675	62,207,062	10,181,015	1,354,887,722
행정 재산	소계	1,275,188,339	61,111,590	9,732,950	1,326,566,979
	공용재산	237,542,900	19,204,133	1,654,106	255,092,927
	공공용재산	1,007,810,977	41,907,457	8,065,764	1,041,652,670
	기업용재산	29,834,462	-	13,080	29,821,382
	보존용재산	-	-	-	-
일반재산		27,673,336	1,095,472	448,065	28,320,743

검사 결과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직전연도말 현재액보다 52,026,047천원 증가한 1,354,887,722천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 물품

물품증감 및 현재액의 결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품 증감 현황

(단위 : 개, 천원)

구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취득	처분	
수량	1,219	227	143	1,303
금액	8,315,356	2,752,881	653,181	10,415,056

검사결과 물품은 직전연도 보다 2,099,700천원 증가한 10,415,056천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Ⅲ. 개선 및 권고사항

1. 전년도 권고사항 환류 진행상황

연번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	해당부서
1	○ 지방세 세무(세원) 조사 철저 - 지방세 세무조사 추정실적이 증가하고 우수구 평가도 받는 등 해당부서에서 적극적인 세무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나 세무조사 대상선정이나 조사방법이 대부분 법인에 대한 서면조사에 의존하고 있음. - 세무조사 대상선정, 조사방법을 직접조사나 기획조사로 개선할 필요가 보여짐. - 취득세 감면신청 관련 해당 과세대상이나 건축물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 요망.	세무1과
2	○ 세입결산과 세출예산 편성 - 국·시비를 포함하는 사업의 경우 교부시기 및 금액에 따라 사고이월이 되거나 사업 중단 및 사업을 축소해야 하는 등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국고보조사업의 경직성 매칭 지방비 예산의 자치구 부담률을 현재 보다 낮게, 조정교부금 교부율은 현재보다 높게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세입관련 부서에서는 새로운 지방세 세원발굴과 세외수입 부과징수 실적 제고 요망	기획예산과 세무1과, 세무2과 세외수입이 있는 전 부서
3	○ 사고이월액의 최소화 노력 필요 - 각종 사업(공사)의 사고이월은 대부분 보조사업으로 해당사업의 예산이 늦게 교부되어 사업기간의 부족과 사업계획의 변경(설계 변경 등)으로 사고이월이 불가피한 경우가 빈번함. - 사고이월은 재이월이 불가하다는 점과 사업기간의 연장 등으로 민원이 유발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가급적 사고이월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해당사업의 보조예산 등이 적기에 교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	사고이월이 있는 전부서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교육지원과, 일자리경제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여생가족과 이동청소년과, 문화체육과 도시관리과, 청소행정과 토목과, 안전치수과 푸른도시과, 교통행정과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과)

연번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	해당부서
4	○ 입찰계약공사의 물량증감에 의한 설계변경 - 예산의 범위 내에서 미리 단가계약을 체결 할 수 있는 공사임에도 공사무량이 현저하게 차이가 있어 당초 예상보다 공사금액이 과다하게 지출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세출예산 편성 요구 시 사업계획수립을 철저히 하여 물량추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며, 세출예산 편성부서에서도 사업(공사) 물량추계가 적정한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	토목과 안전치수과 교통행정과
5	○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관리 철저 - 주차수입 등 일부과목에서는 징수율이 양호하나 건축분야 이행강제금과 교통행정분야 과태료 징수율은 대단히 저조한 실정임. - 세외수입이 자치구 전체 세입과 세출예산편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하여 세외수입이 있는 전 부서에서는 세외수입 부과징수 등 세외수입 관리 및 채납액 징수에 특단의 대책 강구.	주택과, 건축과 푸른도시과, 교통행정과 등 세외수입이 있는 전 부서
6	○ 각종 공사의 설계변경과 용역예산에 대하여 - 각종 공사의 설계변경은 사유에 적합하여야 설계변경이 가능하나 용역건수 및 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공사분야의 설계변경 건수 및 금액도 매년 증가하고 있음. - 각종공사 발주부서에서는 발주하기 전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설계용역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가급적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	토목과, 안전치수과 등 설계변경이 있는 전 부서
7	○ 금액기준 수의계약대상 업체선정 철저 - 종합공사 내에 몇 개의 공정이 있는 수의계약 대상공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시공능력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여야 함에도 공사 업체에 대한 적격성 여부 등을 사전에 검토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 대상 업체 선정 시 해당공사의 규모와 금액에 관계없이 시공능력이 우수한 업체가 선정되도록 자격여부를 면밀히 검토.	전 부서
8	○ 소송관련 예산(배상금 등) 과다 지출 - 2015~2018회계연도별 소송배상금 지출현황 중 특히 민사소송분야에서 소송배상금이 너무 과다하게 지출되었음. - 직무관련 단순·반복사건이나 소액사건 등의 행정소송은 소송주관부서장을 중심으로 담당팀장이 직접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소송가액이 크거나 중요한 민사소송사건은 승소율이 높은 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	전 부서

연번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	해당부서
9	○ 사업예산의 집행잔액 과다 발생 - 사업별로 기 편성된 사업예산이 전부 또는 일부가 불용된 경우는 사업부서에서 세출예산 편성요구 시 해당사업에 대한 사업 시행 가능성, 사업물량, 기타 예상되는 제반문제점 등을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예산편성을 요구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음. - 해당 사업부서에서는 사업계획 변동 등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인한 예산불용액이 가급적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사업예산의 불용이 예상되거나 확실시 될 경우, 감액조치하고 추경예산에 반영.	기획예산과 사회복지과 어르신복지과 여성가족과 문화체육과 토목과
10	○ 사업예산 편성액 전액이 불용된 사례 - 2018회계연도 사업예산 불용현황에 의하면 총13개 부서 15개 사업에 대한 불용액이 3,577,638천원 발생하였고 이는 해당사업 부서에서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검토 없이 예산을 편성 요구한 것으로 판단됨. - 해당부서에는 사업예산의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거나 확실시 될 경우 예산편성 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감액조치하고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해 노력.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과 전산정보과, 기획예산과 일자리경제과, 지적과 복지정책과, 어르신복지과 건설관리과, 토목과 도시재생과, 구의회사무과, 의약과
11	○ 각종 용역예산 집행에 관한 검토 - 2018년 용역비와 용역건수가 2017년 대비하여 증가하고 있는데 지나치게 용역에 의존하는 방법은 직원들의 전문성을 약화시키고 예산을 낭비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됨. - 용역추진 시 용역여부에 대한 타당성을 심도 있게 검토 후 추진해야 하며, 자체추진이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는 분야별 전문직원을 TFT로 구성하여 용역을 대체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기를 권고.	전 부서
12	○ 각종 위원회 운영에 대한 적정성 검토 - 2018회계연도 위원회 운영현황에서 해당 구정사업을 위한 위원회를 95개 구성하여, 293회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109,875천원을 집행하여 49.3%의 집행실적을 나타냈음. - 구정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별, 과별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은 타당하나, 전문가 위촉에 다소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니 위원회 수당을 적정수준으로 상향조정 하고 위원회 수를 조정할 것을 권고.	전 부서

※ 별첨 : 부서별 전년도 권고사항 환류 결과 (p.68~88)

2. 당해년도 권고사항

(1) 예산 불용액의 효율적 운용 제고방안

○ 편성예산 전액 미집행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회계연도	해당부서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2019년도	28개 부서	4,924,948	-	4,515,442	409,506

[출처 :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추출자료]

(현황 및 문제점)

- 2019회계연도 세부사업 통계목별 예산현액 전액을 미사용한 현황을 보면 총 28개 부서 4,924,948천원으로, 이중 이월액 4,515,442천원을 제외하면 409,506천원이 사업변경 등으로 전혀 사용되지 않고 그대로 불용 처리된 예산입니다.
- 사업예산 전액이 집행되지 않고 불용된 경우는 해당부서에서 세출예산 편성 요구 시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검토 없이 예산을 편성 요구한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예산 불용이 예상되는 경우 이에 대한 감액 등 사전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와 같이 불용 처리한 것은 적절하지 못한 예산편성 요구와 예산편성이라고 봅니다.
- 이는 서대문구 전체 가용재원이 부족한 현실에서 당해연도에 예산이 꼭 필요한 다른 사업까지 할 수 없도록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개선 및 권고사항)

- 앞으로 해당부서에서는 예산편성 요구 전에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검토를 통해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예산 전액 미집행 발생이 예상되거나 확실히 되는 경우 예산편성부서와 사전협의하여 지체 없이 감액조치하고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등 예산관리업무의 내부통제를 통해 적법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의 환류가 필요합니다.

- 해당부서 : 감사담당관 외 27개 부서(전부서)

(2) 여비예산 효율적 운용 제고방안

○ 여비 지출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예산현액	지출액	예산잔액	지출비율(%)	비고
합계	3,745,812	2,553,986	1,191,826	68.18	
감사담당관	15,048	11,870	3,178	78.88	
주민자치국	1,256,808	958,728	298,080	76.28	
기획재정국	497,850	263,354	234,496	52.90	
복지문화국	384,104	212,600	171,504	55.35	
환경도시국	493,467	389,340	104,127	78.90	
안전건설교통국	429,880	329,490	100,390	76.65	
도시재생추진단	125,736	70,580	55,156	56.13	
의회사무국	90,456	62,134	28,322	68.69	
보건소	400,843	235,279	165,564	58.70	
자연사박물관	51,620	20,611	31,009	39.93	

[출처 :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추출자료]

(현황 및 문제점)

-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및 여비지급규칙에 따르면 업무수행을 위한 근무지내 출장 시 현지교통비로 여비를 지급하게 되어있

습니다. 근무지내 출장은 동일 시·구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왕복 12km 미만인 출장을 말하며 다른 시·군 등을 경유하여 그 거리가 12km 이상인 경우에는 근무지의 국내출장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근무지의 국내출장의 경우 운임, 숙박비, 일비, 식비 지급이 가능함)

- 근무지내 출장여비 지급기준은 출장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1만원, 4시간 이상인 경우 2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하고(이외에 운임, 일비, 식비, 숙박비 등 별도의 여비는 지급하지 않음), 1일 이내에 4시간 이상 근무지내 출장을 2회 이상 간 경우에도 출장비 합산액은 1일 2만원을 넘지 못하며, 출장 시에 관용차량을 이용한 경우에는 여비 금액에서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 각 부서의 국내여비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산출기준으로 여비 $20,000\text{원} \times 13\text{일} \times \text{부서인원수} \times 12\text{월} \times 0.8 \sim 0.95$ 를 적용하여 일률적으로 편성함에 따라서 출장이 잦은 부서와 그렇지 않은 부서 간의 차이로 인해 1,116,628천원의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개선 및 권고사항)

- 각 부서에서는 국내여비 예산편성 시 출장횟수 등을 감안하여 부서 특성에 맞게 예산을 편성 요구하도록 하고, 예산편성 총괄부서에서는 각 부서별 출장 빈도 등의 특성을 파악하여 예산관리업무의 내부통제를 통한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가능하도록 편성요율 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해당부서 : 전 부서

(3) 기금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방안

○ 연도별 재정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일반회계	559,917	633,591	659,066	694,066	731,308	773,247
특별회계	23,406	34,251	7,889	25,482	26,335	27,298
기금 계	52,174	66,793	3,205	55,776	40,489	28,819
1.공용청사 및 시설건립기금 (구의회청사)	8,421	2,480	-	-	-	-
2.공용청사 및 시설건립기금 (동주민센터)	13,569	12,683	9,005	4,268	-	-
3.공용청사 및 시설건립기금 (교육 및 문화체육)	5,209	5,329	5,430	5,533	5,638	5,745
4.중소기업육성기금	4,514	4,143	3,839	4,256	4,256	4,256
5.사회복지기금(자활계정)	1,352	1,351	1,257	1,161	1,063	962
6.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544	549	562	575	588	601
7.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496	483	479	475	471	467
8.성평등기금	1,166	1,161	1,146	1,131	1,116	1,100
9.난지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운영기금	8,004	7,791	1,947	2,841	3,723	4,594
10.난지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607	-	607	638	651	664
11.옥외광고정비기금	982	948	507	850	841	830
12.도로굴착복구기금	1,550	1,726	1,813	1,866	1,929	2,001
13.지역개발및지하보행 네트워크조성기금	-	1,764	30,019	25,320	13,017	-
14.재난관리기금	4,560	5,228	5,509	5,849	6,256	6,732
15.식품진흥기금	1,200	1,157	1,085	1,013	940	867
계	635,497	734,635	750,160	75,324	798,132	829,364

[출처 : 서대문구 기획예산과, 2020-202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서 34p]

○ 일반예산 및 기금비율 분석

구분	2019년	2020년
총예산 대비 기금비율	8.2%	9.1%
총예산 대비 일반예산비율	88.1%	86.2%

(현황 및 문제점)

- 매년 주요 특정사업이 중장기적으로 집행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원활한 예산집행과 예산집행결과에 대한 효과성 검토를 위해 일반예산에서 기금으로 전출 조성하여, 기금운용원칙 및 기금별 수립된 집행계획에 따라 운용 후 성과분석 및 결산결과 반영을 거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 2019회계연도에는 15개의 기금을 각 해당 사업부서별로 개별 기금조례에 의거 기금운용관이 기금집행계획 수립 및 결산과 성과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5년 단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기금설치목적 달성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기금 조성현황에 따르면 2019회계연도 전체 예산대비 기금비율이 8.2%에서 2020회계연도에는 9.1%로 증가하였습니다. 기금조성금액도 2019회계연도 52,174백만원에서 2020회계연도에는 66,793백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 최근에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라임사태는 기금운용을 책임지고 있는 운용사의 도덕적 해이와 불법행위로 인해 1조 6,000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기금조성 및 집행, 정산, 보고절차 등 기금운용 전반에 대한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아

발생한 사태로서 객관적인 제3자의 검토와 내부통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 또한 매년 총예산 대비 기금조성 비율과 규모 및 기금종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9회계연도에는 추경예산으로 기금을 조성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기금 조성 시 사업 추진시기와 전체 사업계획(마스터플랜)을 충분히 검토한 후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개선 및 권고사항)

- 특정목적의 사업추진에 있어 기금조성은 필요하다 하겠지만 그로 인해 일반회계 가용재원이 상대적으로 제약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금조성의 타당성 확보와 함께 중장기재정계획 수립 시 보다 실질적인 실행계획이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 또한 기금의 규모가 수십억에서 수백억까지 다양하고 중장기적인 사업 성격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각각의 기금조성, 운용, 결산, 보고 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절차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이에 조성된 기금운용의 타당성 및 효과성 검토는 매년 각 기금 운용부서에서 진행하고 있으나, 보다 다각도로 투명하고 객관적인 평가결과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권고하여 드립니다.
- 해당부서 : 기획예산과 및 기금관리 해당 부서

(4) 주요 공사의 감리절차 운영 확대방안

○ 2019회계연도 공사 및 감리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공사	감리용역	비율
건 수	439	35	8.0%
총 계약금액	55,213	1,487	2.7%

○ 2019회계연도 공사계약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계약건명	계약일자	계약금액	발주부서
1	북아현 문화체육센터 신축공사(2차)	2019-12-12	7,558	문화체육과
2	서대문구청 별관 신축공사	2019-07-12	3,360	행정지원과
3	북아현 문화체육센터 신축공사(1차)	2019-03-07	1,968	문화체육과
4	2019~2020년 도로함몰 예방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2권역)	2019-09-27	1,534	안전치수과
5	2019년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	2019-04-01	1,506	토목과
6	2019~2020년 도로함몰 예방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1권역)	2019-09-26	1,197	안전치수과
7	동교배수분구(연희,창천) 하수관로 종합정비공사	2019-04-10	1,108	안전치수과
8	홍제2동주민센터 리모델링 공사	2019-01-14	1,014	자치행정과
9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2019-03-15	990	안전치수과
10	2019년 하천 유지관리 및 시설물 정비공사	2019-01-01	983	안전치수과
11	서대문보훈회관 신축공사	2019-11-01	974	복지정책과
12	북아현 문화체육센터 신축공사(전기)	2019-12-11	856	문화체육과
13	청년창업꿈터 2호점 리모델링 공사	2019-08-27	792	도시재생과
14	신촌 세브란스병원 앞 하수관로 개량공사	2019-12-24	782	안전치수과

15	2019년 관내 하수구조물 보수공사	2019-01-04	754	안전치수과
16	북아현 문화체육센터 신축공사(소방)	2019-12-11	745	문화체육과
17	증가로 28길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2019-03-21	647	안전치수과
18	상권골목(대현동) 도로환경개선공사	2019-06-25	556	도시재생과
19	2019년 관내 보도 유지보수공사	2019-03-21	549	토목과
20	2019년 도로굴착공사	2019-03-26	503	토목과
21	기타공사		26,836	
계			55,212	

[출처 : 서대문구청 재무과, 2019회계연도 공사입찰(계약) 현황자료]

○ 2019회계연도 감리용역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입찰(계약)건명	계약일자	계약금액	발주부서
1	북아현 문화체육센터 신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 2차	2019-09-03	688	문화체육과
2	북아현 문화체육센터 신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 1차	2019-02-20	308	문화체육과
3	서대문구 하수도 분야 전문감리(건설사업관리) 용역	2019-05-07	189	안전치수과
4	서대문구청별관 신축공사 건축분야 감리 용역	2019-02-13	43	행정지원과
5	기타		260	
계			1,488	

[출처 : 서대문구청 재무과, 2019회계연도 감리용역 현황자료]

○ 법률상 감리대상 현황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제39조 및 시행령 제55조
감리란 건설공사가 관계 법령이나 기준, 설계도서 또는 그 밖의 관계 서류 등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거나 시공관리·품질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 지도를 하는 건설사업관리 업무로 건설기술용역사업 중 규모 이상의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의한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게 맡겨 시행하여야 한다. - 설계·시공 관리의 난이도가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건설공사 - 발주청의 기술인력이 부족하여 원활한 공사 관리가 어려운 건설공사 - 이 외의 건설공사로서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2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는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시행
건축법 제25조 및 시행령 제19조
용도·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사나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감리 시행 -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 건축사 - 다중이용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바닥면적 5천제곱미터이상, 연속된 5개층 이상으로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상, 아파트 : 기술사사무소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건축사보가 공사기간 동안 공사현장에서 감리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6조, 제17조 및 시행령 제10조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 소화설비 등 소방시설을 시공할 때에는 소방시설공사의 감리 시행 - 상주 공사감리 :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으로서 500세대이상인 아파트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8조, 제20조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 공사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설계 및 공사감리 시행 - 전압 10만볼트 이상의 수전설비·구내배전설비·전력사용설비 -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전력시설물 - 전기사업법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전력시설물공사, 인입선 및 저압배전설비 공사 등

정보통신공사법 제8조 및 시행령 제4조, 제8조

정보통신설비, 방송설비, 정보설비, 기타설비 공사 시행시 감리 시행

- 감리대상 예외 : 경미한 공사,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하 건축물의 설비, 5회선 이하의 구내통신선로 설비,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1억원 미만 공사 등

(현황 및 문제점)

- 건설관련 공사 시행 시 관련법령 상 일정규모 이상일 경우 설계 및 과정이 적절하게 시행되는지에 대하여 전문적 기술을 가진 건설기술 용역사업자에 감리를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그 외에 소규모 공사 등 경미한 경우 해당부서 담당자가 관리 감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2019회계연도 총 공사는 439건, 55,213백만원이며, 감리진행은 35건, 1,487백만원으로서 총공사 건수 대비 8% 수준만 감리가 진행되었습니다.
- 감리는 건설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실공사 및 부정부패 요소의 제거 등 각종 부조리문제의 해결을 위해 그 역할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사후적으로 부실공사의 폐해 방지와 행정의 신뢰도 향상이라는 주요한 목적을 위해서도 필요한 사항입니다.
- 하지만, 실무부서에서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공사규모, 공사성격, 공사기간,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공사 감독권한대행 감리를 진행하고 있어서 감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부실공사 사전 예방 효과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개선 및 권고사항)

- 현재 운영 중인 감리대상 선정절차에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총사업비 및 공사규모 기준보다 감리대상을 확대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여 드립니다.
- 이를 통해 법률상 요건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해서만 감리종류를 적용하기보다 일정규모 이하의 공사에 대해서도 사전감리를 적용함으로써 사후관리보다는 사전에 공사의 하자 예방 등 안전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해당부서 : 푸른도시과, 문화체육과, 안전치수과, 여성가족과, 토목과, 교통행정과, 자치행정과, 도시재생과, 행정지원과 등 공사 추진 전부서

(5) 행정·민사 소송 관리 방안

○ 연도별 소송 종결현황

(단위 : 건, 원)

구분 연도	합 계			행정소송			민사소송			
	총계	승소	패소	계	승소	패소	계	승소	패소	지출금액
2018	59	49 (83.1%)	10 (16.9%)	45	38	7	14	11	3	5,548,714
2019	49	35 (71.4%)	14 (28.6%)	30	24	6	19	11	8	6,205,724

[출처 : 서대문구청 기획예산과 2019년 송무수행 자료]

○ 소송수임료 지출 현황

(단위 : 건, 천원)

구분 연도	합 계		행정소송		민사소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8	74	345,705	22	69,310	52	276,395
2019	67	219,760	25	92,325	42	127,435

[출처 : 서대문구청 기획예산과 2019년 송무수행 자료]

(현황 및 문제점)

- 2018년도 대비 행정·민사소송 건수는 10건 줄었으나 패소율은 16.9%에서 28.6%로 높아졌으며, 소송배상금도 5,548,714천원에서 6,205,724천원으로 증가하여 과도한 지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주 패소원인은 재개발·재건축의 법령 해석에 관한 법원과의 견해 차이로 민사소송 분야에서 소송배상금이 과다하게 지출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의 정비기반시설 범위 및 강행규정인 무상양도에 대한 법령해석의 견해 차이

-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 또는 철회하는 경우에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한 판례와 배치되는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재량권 범위 등에 대한 처분청과 법원과의 견해 차이 등

(개선 및 권고사항)

○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의 신뢰성 향상과 소송배상금 절감을 위해서는 법원과의 법령해석 견해차이로 인해 패소한 경우가 많으므로 서대문구 법률고문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행정처분의 적법성 확보에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 특히 재개발·재건축 관련 소송에서의 패소로 인한 배상금액이 많으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국토계획법」의 관계, 정비사업의 특수성, 정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의 관계, 용적률 체계 등에 대해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소송 주관 부서장은 관련분야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시행 초기부터 응소까지 세밀한 자료 분석으로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권고합니다.

○ 해당부서 : 기획예산과 및 소송 수행 전부서

(6) 균형 있는 세입·세출예산 편성

○ 현황 및 문제점

[표1] 최근 5년간 세입·세출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5년 평균 증가율
세입		429,655	516,616	591,766	639,710	727,396	14.1
세출		353,783	399,184	468,328	489,641	570,683	12.7
잉여금	소계	75,872	117,432	123,438	150,069	156,713	19.9
	이월금	26,827	38,177	48,378	48,380	46,968	15.0
	보조금 집행잔액	3,800	8,012	6,244	5,344	8,596	22.6
	순세계 잉여금	45,245	71,243	68,816	96,345	101,149	22.3

[출처 : 2019회계연도 서대문구 결산서안(I) 12p]

- (1) 결산상 잉여금의 5년 평균 증가율은 22.3%이고 2019회계연도는 101,149백만원으로 세입총액 727,396백만원의 13.9%를 차지하는 등 매년 계속하여 증가해 오고 있음
- (2) 예산편성시 세입·세출 계획의 착오로 인한 순수미집행 잔액인 순세계잉여금이 잉여금 전체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그 개선책이 요구됨
- (3)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재정분석 평가시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효율성 관리에 높은 평가를 받게 됨

[표2]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연도별 내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세입액	세출액	이월금	보조금 반납금	순세계 잉여금
2019	696,913	561,849	39,175	8,172	87,717
2018	613,551	480,220	46,268	5,283	81,780
2017	566,362	461,620	44,276	6,231	54,235
2016	491,044	388,644	36,555	7,886	57,959
2015	410,057	347,928	24,902	3,737	33,490

[출처 : 2019회계연도 서대문구 결산서안(I) 33p,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추출자료]

- (1)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5년 평균 증가율은 31.17%이고 2019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예산의 14.73%를 차지함
- (2) 순세계잉여금은 세입관련잉여금인 초과세입금과 세출관련잉여금인 집행잔액으로 구성되는 바, 2019회계연도 초과세입금은 40,945,342천원이고 집행잔액은 60,204,004천원임
- (3) 순세계잉여금의 규모가 너무 클 때 재정운용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재정운용의 경직성이 예측됨

[표3] 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액이 큰 부서 현황(10억원 이상)

(단위 : 백만원, %)

부 서	예산현액	실제수납액	차이금액	비 율
기획예산과	132,176	158,916	26,740	20.23
전산정보과	201,950	222,905	20,955	10.38
홍보과	70,760	81,034	10,274	14.52
세무1과	85,848	92,887	7,039	8.2
재무과	133,577	138,896	5,319	3.98
어르신복지과	87,985	89,228	1,233	1.4
주택과	1,586	2,592	1,006	63.43

[출처 : 2019회계연도 서대문구 결산서안(I) 48~109p 각 조직별 합계 중 발취]

- (1) 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액의 차이가 큰 부서의 경우 예산 미편성 또는 과소 편성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 (2) 소극적인 세입추계는 적절한 세출예산 편성을 저해하는 요소가 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

(개선 및 권고사항)

- 「지방자치법」 제122조(건전재정의 운영)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는 적자재정은 물론 이익재정도 지양(止揚)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에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727,396백만원 중 세입 예산의 59.7%를 차지하는 보조금, 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시기적절한 집행으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또한, 지출비율이 높은 부서 및 우선순위 사업에 대한 선택적 집중은 고려하되 균형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세입·세출예산의 보다 정확하고 합리적인 예측이 요구됩니다.
- 순세계잉여금의 수준은 적정한지 또는 그 증가원인은 무엇인지를 분석하여 관행적이고 보수적인 예산편성에서 탈피하여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 보기를 권고합니다.
- 해당부서 : 기획예산과, 세무1과 및 전부서

3. 우수사례

(1) 민간분야사업 계약심사 지원을 통한 예산절감

☐ 계약심사 사례

① 공동주택(공사·물품 용역 등) 보조사업

- 계약심사 : 57건
- 절감액 : 118,768천원

② 공동주택 LED 교체 공사

(단위 : 천원)

구 분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율
기계등	20,955	15,840	5,115	24.4%

[출처 : 서대문구청 감사담당관 2019년 계약심사자료]

- LED 조명등 단가 조정

- LED 비상점용 원형센서등(12W) : 23,000원/개 → 16,363원/개
- LED 원형직부등(12W) : 18,000원/개 → 13,272원/개

- 제비율 조정(2019년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적용)

- 간접노무비 : 당초 10% → 조정 7.9%
- 산재보험료 : 당초 4.05% → 조정 3.75%

③ 어린이집 환경개선 및 교구 구입

(단위 : 건, 천원)

구 분	건 수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공사 및 교구 구입	30	1,370,973	1,346,850	24,123

[출처 : 서대문구청 감사담당관 어린이집 환경개선 및 교구 구입 관련 계약심사자료]

- 주요 심사 내용

- 민간위탁사업비 교부 시 어린이집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존, 사후 정산을 받음으로 전문성이 떨어져 예산낭비 발생
- 환경개선 공사, 교육용 교구 및 교재 구입 등 소규모일지라도 원가심사를 통해 예산절감

○ 계약심사 관련 부서인 감사담당관에서 분야별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원가분석 자문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공성이 요구되는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계약심사를 의무화하고, 공동주택 보조사업 관련 계약심사를 지원하고 있는 것은 적극적인 행정의 우수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이는 계약심사 관련 부서인 감사담당관에서 최선을 다한 업무추진 결과라 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계약심사 제도를 더욱 확대시켜 구민들에게 경제적인 이익과 편의를 제공하고 체계적인 사업원가 구축으로 예산절감 및 구정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기 바랍니다.

○ 해당부서 : 감사담당관

(2) 적극적인 세무조사를 통한 세원 발굴

○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감면 지방세 추정 : 164,134천원

- 주택건설사업계획지구 내의 기존 건축물을 존치하고 잔여부지를 활용하여 임대주택을 증축하는 경우로서, 기존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주택건설사업계획 부지에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부속토지는 건축 완료 이후에도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의 부속토지가 아니라 근린생활시설인 기존 건축물에 전속하여 사용되는 부속토지이므로,
-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고 과세예고를 한 후 서울시의 과세적부심절차를 거쳐 추정한 건으로서 임대주택 감면물건 취득 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통한 감면 부적정한 지방세를 추정한 사례입니다.

○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 압류를 통한 체납징수 : 100,000천원

- 체납법인 : ** ****(주)
(제3채무자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2018년도 **동 *** 아파트 단지 내 상가 35호실을 분양 대행 회사가 일괄취득 후에 제3자에게 재분양하여 이를 사실상 취득 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 건으로,
- 즉시 환가 가능한 체납법인의 귀속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미분양 상가의 등기이전권리인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을 압류하는 것을 핵심징수방안으로 판단하여 조기 채권확보 후 체납처분의 실효를 거두기 위해 지속적, 단계적으로 제3채무자(조합)와의 상호신뢰를 형성함으로써 체납자와 제3채무자, 구청 간의 협의를 이끌어내

적극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한 우수 사례입니다.

향후 잔여호실 분양 시에도 체납징수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도 서대문구의 재정여건이 타구와 비교해서 비교적 열악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위와 같이 체납 및 감면 분야에 대한 사후 관리 시 문제의식을 가지고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세원 발굴에 적극 임함으로써 서대문구의 세수 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부서 : 세무1과, 세무2과

(3) NICE 시스템을 활용한 주민세 체납징수율 제고

○ NICE 시스템 활용 전·후 체납 징수실적 비교

(단위 : 건, %)

세목	구분	비교 월	목 표 (A)	부과	징 수 (B)	징수율 (B/A)
주민세 (균등분)	전월대비	2019. 11	1,228	1,360	1,195	87.9
		2019. 12	1,228	1,360	1,230	90.4
	전년대비	2018. 12	1,172	1,382	1,218	88.1
		2019. 12	1,228	1,360	1,230	90.4
주민세 (재산분)	전월대비	2019. 11	445	400	389	97.2
		2019. 12	431	398	395	99.1
	전년대비	2018. 12	434	420	414	98.6
		2019. 12	431	398	395	99.1

[출처 : 서대문구청 세무2과 징수실적 비교자료]

○ 체납 유형별 납부독려 문자 발송 (예시)



NICE 시스템은 자체 CB컨소시엄(정보공유협의체)을 통해 전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신용정보를 활용하여 개인식별정보를 공공기관에 제공하며 실시간으로 관리기간 경과건 삭제 및 자체 업데이트 시스템이 국내에서 가장 우수함에 착안함.

특히 ‘압류예고 연락처 조회서비스’는 특정기간 내 최빈/최근 건 전화번호 검증 등 정확성을 교차 제고하여 연락처를 추출하므로 민원 우려를 최소화시킴

- 종이고지서 우편송달 방식은 송달누락 및 반송률이 높아 납세 고지서 송달 방법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며, 휴대폰 사용이 일반화되고 사회 전반의 의사소통 양식이 디지털화, 고도화됨에 따라 종이고지서를 대체하는 전자송달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특히 고지건수가 많은 주민세의 경우 송달지연 및 누락 등의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과세액이 소액이다 보니 납세의무에 대한 경각심이 낮은 반면 조세 저항이 작아서 체납자가 체납사실을 정확히 인지하면 체납징수율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 2019년도에 도입한 지방세입 체납 모바일문자 웹서비스의 경우 서울시 연결과 체납자의 문자 열람률이 6.5% 정도에 불과하여 징수 효과가 미비하나, NICE 시스템을 활용한 체납독려 문자 발송은 징수율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음이 검증되었으므로,
- 해당부서 소액 체납자는 물론 타세목 및 과년도 체납분에도 적극 활용하여 체납징수율 제고와 주민의 납세편의 증진에 기여하기 바랍니다.
- 해당부서 : 세무2과

【별첨】 부서별 전년도 권고사항 환류 결과

연번	부서명	개선 및 권고사항	개선 및 권고사항 이행결과
1	세무1과	지방세 세무(세원) 조사 철저	○ 지방세 세무조사는 일반조사, 기획조사 등의 유형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직접조사 또는 서면조사의 방식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세무조사 운영규칙 제11조 제2항에서 일반 조사 시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 다만, “서면조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작성한 자, 최근 5년간 10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 등은 직접 조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 직접조사 대상으로 13개 법인 조사, - 기획조사 대상으로 134개 법인 조사, - 감면물건조사 대상으로 198건을 조사함 ○ 2020년도부터는 지방세기본법 제82조 규정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반조사 대상을 먼저 선정하고, 서면조사 또는 직접조사 여부는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조사를 실시하고자 함.
2	기 획 예산과	세입결산과 세출예산 편성	○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2020년도 본예산 편성 시 중앙부처나 서울시로부터 교부되는 보조재원의 집행시기 및 금액을 적극 검토하여 무조건적 확정내시액 편성을 지양하고 실제 사업량에 맞도록 세출예산을 편성토록 노력하였음 ○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등 사회복지예산의 확대 및 국고보조 매칭사업비의 증가에 따라 자치분권지방정부 협의회 및 지방분권 포럼을 통한 지방소비세 확대, 부동산분 양도소득세 지방세 전환 등을 통한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 및 4대 복지사업 전액 국비 지원 등 분권형 국고보조금 개혁을 건의하는 등 자치분권을 위한 재정분권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였음.

연번	부서명	개선 및 권고사항	개선 및 권고사항 이행결과
2	세무1과	세입결산과 세출예산 편성	○ 국세의 지방세 이양관련 지속적인 업무 추진 - 2019년 지방세 연구동아리 서대문 센세(稅)이션 활동으로 지방세 연구보고서 2건 제출 ○ 2019회계연도 시세입종합징수분야 평가결과 우수한 성적(서울시 5위, 재정지원금 130백만원)인 “수상구” 수상 - 세입징수 특별대책 보고회 개최함(6월, 11월, 12월) ○ 공평과세 및 세입증대를 위한 세원발굴 추진 : 2019년 세원발굴 ▷ 772백만원 ○ 2020년에도 지방세 세입증대를 위한 지방세 연구동아리 활동 강화, 세입확보 및 세입징수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하고자 함 - 2020년 세입징수 종합대책 추진 계획 수립(5월), 지방세 연구동아리 연구과제 제출(7월)
2	세무2과	세입결산과 세출예산 편성	○ 2019년 세외수입 징수목표 달성 추진계획 [세무2과-4389(2019.2.25.)] ○ 추진내용 :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달리 납부의식 결여로 고질 체납이 누적 되고 있어 전자예금 압류를 통한 징수, 부동산 공매 예고 발송, 체납고지서 및 납부촉구 안내문 발송, 문자발송 등을 통한 지속적 납부독려와 체납자 재산의 압류 등 소유권에 대한 권리 설정,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등 강력한 각종 행정제재 실시 ○ 징수율 향상을 위한 세부추진실적 - 세외수입체납 정기이관 : 4회, 3,080건, 2,548백만원 - 체납고지서 발송 : 12회, 131,355건, 112,598백만원 - 전자예금 압류 : 414건, 1,107백만원 ▶ 징수(799백만원) - 분납자 관리 및 징수독려를 통한 징수 ▶ 389건 875백만원 -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 7명(30건), 483백만원 ▶ 징수(209백만원) - 부동산 압류 : 662건, 2,356백만원 ▶ 징수(205백만원) - 자동차 압류 : 2,260대, 1,559백만원 ▶ 징수(506백만원) - 부동산 공매 예고 발송 : 965명(3,512건) 6,603백만원

연번	부서명	개선 및 권고사항	개선 및 권고사항 이행결과
2	세무2과	세입결산과 세출예산 편성	○ 세외수입 부과·징수 관리체계 강화 - 세외수입 관련부서 자체 교육 실시 : 연 1회 - 세외수입 징수보고업무 전산화 추진으로 효율적 운영
3	행정 지원과	사고이월액의 최소화 노력 필요	○ 청사 신축사업은 사전절차이행, 설계용역, 공사발주, 공사시행 등 사업 특성상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으로 당해 연도에 사업을 완료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임 ○ 서대문구의회 청사(복합청사)는 2019. 12월 준공처리 ○ 서대문구청 별관은 2020. 4월(현재) 신축공사 진행 중이며, 추진사항에 따라 기성금 등 지급
3	자치 행정과	사고이월액의 최소화 노력 필요	○ 2019회계연도 사업 중 사전절차의 이행, 사업비 총액 확보에 따른 사업추진 지연 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소요되어 당해연도 내에 사업을 완료하기 어려워 불가피하게 사고이월하였음. - 남가좌2동주민센터 리모델링 : 2020년 상반기 준공예정 - 홍제1동 복합청사 건립 : 시유지 매입에 따른 절차 진행 - 충현동 자치회관 리모델링 : 2020년 상반기 준공예정 - 홍제1동 자치회관 승강기 설치: 2020년 상반기 준공예정
3	교육 지원과	사고이월액의 최소화 노력 필요	○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마을강사 플랫폼 구축 사업 사고이월 - 2018년 교육부에서 전국 공모사업을 하반기에 최초시행, 사업비가 11월에 교부되어 사고이월 - 교육부에 문제제기를 통해 2019년부터는 1/4분기에 공모선정 및 사업비 교부 완료 ○ 학교 가상현실(VR)스포츠실 설치 지원사업 사고이월 -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사업비를 12월 19일에 교부하여 사고이월 조치 - 향후 외부재원 조기 확보 추진

연번	부서명	개선 및 권고사항	개선 및 권고사항 이행결과
3	일자리 경제과	사고이월액의 최소화 노력 필요	○ 2019년도 사업 중 포방터시장 주차장 조성공사, 화재 알람시설 설치, 푸드트럭 특화거리 조성사업이 이월된 사유는 사업성 검토결과 사업성이 없어 주차장 조성 계획이 변경되었으며, 화재알람시설 인증제품 미 출시로 인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침 개정 및 인왕시장 상인회의 내부갈등 등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이월액이 증가하였음. ○ 향후 사업추진 시에는 더욱 적극적인 행정과 신속한 예산집행으로 이월액을 최소화하겠음.
3	복 지 정책과	사고이월액의 최소화 노력 필요	○ 보훈회관 설계 용역비로 2018. 12. 31.까지 사업을 완료 하기에는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사고이월 후 2019. 7. 31. 집행 완료
3	사 회 복지과	사고이월액의 최소화 노력 필요	○ 사고이월액의 최소화 노력 필요 - 2019회계연도 사고이월액 없음
3	어르신 복지과	사고이월액의 최소화 노력 필요	○ 경로당 운영지원 (공기청정기 구매지원, 흥제2동 커뮤니티센터 신축) - 개선 및 권고사항에 따라 보조재원이 적기에 교부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2019년도에는 사고이월 내역이 발생하지 않았음.
3	여 성 가족과	사고이월액의 최소화 노력 필요	○ 종합보육시설 건립 시, 폭염 및 지하수 유출, 인테리어 공사 반영 등에 따라 준공기한이 연기되어 발생한 사고 이월 건으로, 2019. 2월에 준공완료 되었음 ○ 2019년 어린이집 공사분야에 대한 예산 사고이월액을 최소화하였음 (2018년 1,951백만원 → 2019년 43백만원)

연번	부서명	개선 및 권고사항	개선 및 권고사항 이행결과
3	아 동 청소년과	사고이월액의 최소화 노력 필요	○ 청소년 전용카페 조성사업 리모델링 공사비 이월 - 청소년 전용카페 조성 예정지가 당초 예상과 달리 여건에 맞지 않아 대체지 물색 및 발굴에 시일이 경과하여 12월말 리모델링 공사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을 실시하였으며 2월 공사 시행으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향후 시행착오가 없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 작업을 통해 합리적이며 신속한 사업추진으로 사고이월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음
3	문 화 체육과	사고이월액의 최소화 노력 필요	○ 북아현 문화체육센터 건립은 장기계속계약 사업으로 설계용역 및 계약심의 등의 사전절차가 2018. 12월에 완료됨에 따라 기 확보 예산을 사고이월하여 공사비로 충당하였고, 외부재원 적기 확보 및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해 사고이월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이월된 예산 1,519,013천원은 2019년 집행 완료하였음. ○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은 국·시비 보조금 사업으로 문화재청 설계검토·승인, 관계전문가 자문회의, 설계용역, 공사발주·시행 등의 절차에 상당기간이 소요되며 예산 교부가 늦어질 경우 사고이월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음. 향후 보조재원이 적기에 교부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제안하고 조기 착수(발주), 기성금 및 선금 지급 등 이월예산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음 ○ 이진아도서관 시설개선 사업은 외부재원이 연도말 교부되어 이월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으나, 향후 외부재원 등 예산의 조기 확보 및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사고이월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음. 이진아기념도서관 시설 기능개선 사업비 241,712,640원 집행 완료하였음.

연번	부서명	개선 및 권고사항	개선 및 권고사항 이행결과
3	문화체육과	사고이월액의 최소화 노력 필요	○ 신촌문화발전소 외부홍보간판 설치 공사는 개관 이후 5개월여 간의 운영 결과에 따라 설치가 결정된 사업으로 11월말 경 착공예정이었으나, DID공사가 가능한 ‘정보통신공사업’ 업종이 등록되어 있으며 발전소 환경에 적합한 시공이 가능한 업체 선정에 예상보다 시일이 소요되어 착공이 늦어짐. 이에 당해연도 시설비 지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사고이월 후 2019년 집행 완료하였음. 향후 사업계획 수립 시 단계별 필요 진행사항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 및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당해 연도 내 사업을 완료하여 사고이월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3	도시관리과	사고이월액의 최소화 노력 필요	○ 지구단위계획 수립(재정비) 관련 용역 - 서울시 주관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의하여 2019년 연내 용역 준공하였음. ○ 빗공해 방지 - 옥외조명 실태조사 용역사업의 조사대상(광고조명) 범위가 당초 계획보다 확대됨으로써 용역기간 부족으로 이월 시행하여 2019년 연내 준공하였음 -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 시 면밀한 사전검토와 신속한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으로 사업비 이월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음.
3	청소행정과	사고이월액의 최소화 노력 필요	○ 생활폐기물 압축처리비, 혼합재활용품 선별 및 잔재 처리비, 음식물폐기물 위탁처리비 등은 전월 발생량을 확인 후 다음해 익월 초에 지급 ⇒ 12.1~15 실적분은 당해연도에 지급하고 12.16~31의 실적분은 다음해 익월 초에 지급하여 사고이월을 없앴음. ○ 다만 도로청소차(살수) 조달구매 시 신속집행을 위해 선지급금 지급 후 남은금액(224,274,290원)은 2020년 2월에 납품 완료되어 사고이월이 불가피하였음.

연번	부서명	개선 및 권고사항	개선 및 권고사항 이행결과
3	토목과	사고이월액의 최소화 노력 필요	○ 2019년 예산편성 시 사전 사업계획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요구 및 편성, 집행에 노력하였음
3	안전 치수과	사고이월액의 최소화 노력 필요	○ 예산집행 시 사업규모, 시기 등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사업추진에 필요한 절차를 적기에 시행하고 당해연도 내 사업을 완료하여 이월을 최소화 하도록 함
3	푸른 도시과	사고이월액의 최소화 노력 필요	○ 유니버설디자인 통합놀이터 조성사업 - 정상추진·사업완료(2019.09.30.) ○ 안산자락길 숲속무대 및 전망대 조성사업 - 정상추진·사업완료(2019.05.15./2019.03.25.) ○ 생태연못(안산방죽) 환경 정비사업 - 정상추진·사업완료(2019.06.17.)
3	교통 행정과	사고이월액의 최소화 노력 필요	○ 교통행정과에서는 2019년 사고이월 예산이 없었으며, 향후 각종 사업(공사)시에도 사고이월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음
3	도시 재생과	사고이월액의 최소화 노력 필요	○ 안산자락마을 도시재생 활성화사업(305,696,120원) - 전년도 이월사업인 타당성 조사용역은 2019. 3. 준공됨 -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은 2018. 12. 기성금을 기 지급하여 사고이월액을 최소화하였으며, 활성화계획이 수립된 2019. 10. 준공됨 - 활성화 지원용역은 기성금 지급을 통해 예산을 신속 집행하였으며, 2019. 12. 준공됨 ○ 도시재생 에너지자립기반확대 시범사업(43,830,000원) - 서울시 보조금 사업으로서 연말에 보조금이 지급되어 사용에 어려움이 있었음 - 당초 신청자는 11가구 정도 되었으나 주택측량 결과 노후화에 다른 위험사유 등으로 2가구만 설치 진행함 - 이에 따라 남은 보조금 차액은 서울시로 반납 예정임

연번	부서명	개선 및 권고사항	개선 및 권고사항 이행결과
3	사회적 경제과	사고이월액의 최소화 노력 필요	○ 사고이월액 차년도(2019년) 조기집행 완료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 · 총 예 산 : 165,000천원 · 사고이월액 : 61,750천원 · 사업완료 : 2019. 2. 22. - 이행결과 : 본 사업은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을 위한 용역사업으로서, 용역진행과정에서 추가과업이 필요함에 따라 용역수행기간을 2개월 연장하였음(용역종료일: 당초 2018. 12월 → 변경 2019. 2월). 용역 완료 후 2019. 2월에 준공검사 실시 후 신속히 사고이월액을 집행함.
4	토목과	입찰계약 공사의 물량증감에 의한 설계변경	○ 2019년 예산 편성 요구시 단가계약 대상 공사물량을 좀 더 면밀하게 추계하여 물량증감에 따른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사업계획 수립 시 3개년도 물량을 산정하여 세출예산 편성 요구하였음
4	안 전 치수과	입찰계약 공사의 물량증감에 의한 설계변경	○ 2018년 8월말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침수 77건 발생으로 수해복구가 시급히 대두하여 공사물량이 증가된 사항 으로 향후 사업계획 수립, 공사 추진 시 적정 물량 산출 및 설계될 수 있도록 함
4	교 통 행정과	입찰계약 공사의 물량증감에 의한 설계변경	○ 그린파킹사업은 2004년부터 16년째 시행하는 사업으로 장기간 시행에 따른 대상지 감소로 신청가구 감소 추세임 ○ 2020년에는 전년 대비 38% 감액된 구비 예산을 편성 하고 그에 따라 적절한 사업계획 및 공사물량을 산정 하여 설계변경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였음

연번	부서명	개선 및 권고사항	개선 및 권고사항 이행결과
5	주택과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 관리 철저	○ 세외수입 부과·징수의 효율적인 관리 및 보다 강력한 체납징수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 체납 건 지속적인 독촉 고지 및 이행강제금 납부기간 경과 시 체납 독촉 고지 중임 ○ 체납 고지서 수시 발송으로 체납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체납자 부동산 압류 등 체납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이행 강제금 납부 등 독촉기간 경과 후 미납 시 즉시 압류예고 통지 및 압류 추진 중임
5	건축과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 관리 철저	○ 세외수입 체납 발생 최소화 - 부과·독촉고지서 송달 철저 - 독촉기간 경과 후 체납 시 즉시 압류
5	푸른 도시과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 관리 철저	○ 위반건축물 시정촉구 및 정상화방안 강구 - 건축이행강제금 징수와 관련하여, 분할납부 등의 방법을 통하여 납부 유도 및 이행강제금 미납 시 압류대상에 대한 공매처분을 적극 검토
5	교통 행정과	교통 분야 과태료 징수율 증대를 위한 세외수입 관리 및 체납액 징수대책 강구	○ 과태료 독촉고지 후 즉시 압류처분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영업하지 아니하는 법인명의로 차량에 대하여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조회하여 실제 운행자에게 고지 및 압류를 예고함. - 압류처분 내역 : 2017년 466건/ 2018년 488건/ 2019년 831건
6	여성 가족과	각종 공사의 설계변경과 용역예산에 대하여	○ 종합보육시설 건립 시, 폭염 및 지하수 유출, 인테리어 공사 반영 등에 따라 공사비 증액 및 준공기한 연기로 부득이하게 설계변경한 건으로, 2019. 2월에 준공 완료 되었음 ○ 발주 시부터 공사 단계별 진행 사항을 철저히 검토하여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고 있음

연번	부서명	개선 및 권고사항	개선 및 권고사항 이행결과
6	토목과	각종 공사의 설계변경과 용역예산에 대하여	○ 설계용역 시행여부 검토 - 공사 발주 전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공사시행 시 리스크를 최소화하여 과도한 설계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음
6	안전 치수과	각종 공사의 설계변경과 용역예산에 대하여	○ 공사 발주 전 설계용역의 필요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발주하겠으며, 공사기간 중에 설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설계 시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변경이 발생되지 않도록 함
6	푸른 도시과	각종 공사의 설계변경과 용역예산에 대하여	○ 공사 중 민원발생 또는 설계 시 확인이 어려운 지중 구조물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하나, 설계용역을 통해 설계변경을 최소화 하고,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도급비 범위 내에서 실시하여 증액을 최소화하였음. ○ 또한 공사진행 중 발생하는 민원을 수렴하기 위해 설계변경이 되는 사항이 많은 바, 사업계획 수립 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공사 시 주민들의 요구사항으로 인한 설계변경이 없도록 노력 중임.
7	행정 지원과	금액기준 수의계약 대상업체 선정 철저	○ 2019년 흡수식 냉온수기 교체 공사와 관련하여, 여러 공정을 추진하면서 시공능력 및 계약이행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수한 업체 선정을 추진하였음. 특히 과업지시서 등을 보완하여 엄격한 기준으로 업체 선정을 진행하였음. ○ 추후에도 많은 공정이 필요한 공사에 진행 경험 및 적격성 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우수한 업체 선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음.
7	사회 복지과	금액기준 수의계약 대상업체 선정 철저	○ 금액기준 수의계약대상 업체선정 철저 - 계약금액 1,500만원 미만의 공사 또는 물품구입 계약 9건에 대하여 일반경쟁/조달구매로 계약함

연번	부서명	개선 및 권고사항	개선 및 권고사항 이행결과
7	여 성 가족과	금액기준 수의계약 대상업체 선정 철저	○ 우리부서는 금액기준 수의계약 업체선정 시, 어린이집 설계경험 및 전적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술력이 있는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고 있음.
7	푸 른 도시과	금액기준 수의계약 대상업체 선정 철저	○ 수의계약 대상 업체 선정 시 시공능력이 우수한 업체가 선정되도록 자격여부 등 시공실적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시 내부보고를 통해 준공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8	기 획 예산과	소송관련 예산(배상금 등) 과다지출	○ 행정·민사 소송 등 소송수행 시 적극 대응 요청 전 부서 공문 발송 - 소송의 경중에 따라 업무의 전문성을 지닌 소송수행자를 지정하여 소장 접수부터 소송비용 회수까지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승소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대응 요청
8	사 회 복지과	소송관련 예산(배상금 등) 과다지출	○ 장애등급 인정 관련 소송 2019구단 70486, 2018구단 23810, 생계급여 지급 관련 소송 2019구합 87672는 담당팀장 및 담당자가 직접 수행하고 있음
8	주 택과	소송관련 예산(배상금 등) 과다지출	○ 소송배상금 중 원금(인용금액)은 판결에 따른 금액이므로 지출이 불가피하며, 원금에 대한 이자액을 줄이기 위하여 판결 이후 빠르게 배상금을 지급하여 총 배상금을 최대한 줄였음. ○ 부당이득금 관련 민사소송은 법무법인 변호사를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처리 중.
9	기 획 예산과	사업예산의 집행잔액 과다발생	○ 예산의 불용이 확실 시 될 경우, 추경예산 편성기간을 감안하여 잔액을 최소화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음.

연번	부서명	개선 및 권고사항	개선 및 권고사항 이행결과
9	사 회 복지과	사업예산의 집행잔액 과다 발생	○ 2019년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사업은 추경으로 36,803천원 감액하였음 (예산현액 1,623,266천원, 집행잔액 45,262천원, 집행잔액을 2.8%) ○ 2019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낮활동 사업은 전액 집행하였음. (예산현액 85,242천원, 집행잔액 85,242천원, 집행잔액을 0%) ○ 2019년 장애인연금 사업은 98.5% 집행하였음. (예산현액 4,030,522천원, 집행잔액 58,756천원, 집행잔액을 1.5%)
9	어르신 복지과	사업예산의 집행잔액 과다 발생	○ 노후생활 지원 - 「서대문시니어 안심택배 사업」과 「청년 스마트 매니저 사업」은 2018년 종료 사업으로 향후 사업 추진 시 주민과의 이해관계 발생, 사업물량 적정여부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불용액이나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음.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의 특성상 건강 문제 등으로 중도포기자가 수시로 발생하여, 사업별 참여자 관리 및 예산 모니터링을 철저히 실시하고 참여자 추가선발, 사업기간 조정 등을 통해 집행잔액을 줄였음. ○ 노인복지 인프라 확충 및 지원 - 개선 및 권고사항에 따라 사업 집행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2019년도에는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반영하였음.

연번	부서명	개선 및 권고사항	개선 및 권고사항 이행결과
9	여 성 가족과	사업예산의 집행잔액 과다 발생	○ 2019년도 예산 편성 시 어린이집 신규확충, 인건비 인상률, 맞벌이 부부 비율 증가에 따른 시설(어린이집 · 유치원 ·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아동 수 증가 현황과 저출생으로 인한 가정양육 아동 수 감소 등을 반영하여 실질적 지출예상액으로 예산 편성함. - 2020년도 회계 시 신규확충시설 7개소, 최근 3년 평균 인건비 인상률 2.8%를 반영하여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예산 편성함. - 2017년 대비 2018년 가정양육수당 집행액이 약 7% 감소한 것을 감안하여, 2020회계연도 예산편성 당시 가정양육수당 집행예상액(약 72억원)의 약 7%만큼 감액하여 본예산에 반영함. (1,756,240천원 감액) ○ 2019회계연도 시, 출생률 감소 및 사업 계획 변경 등 불용액이 과다할 것으로 예상되어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운영지원 (교재교구비)’, ‘보조 교사 지원(시비보조)’ 을 감액하여 추경 예산에 반영함. (총 717,684천원 감액)
9	문 화 체육과	사업예산의 집행잔액 과다 발생	○ 당초 다목적체육관 옥상에 풋살장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공원시설 설치 건축물의 높이 제한규정으로 설치 불가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차후 해당사업에 대한 가능성 및 제반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편성 요구하겠으며 불용이 예상될 경우 감액 조치하여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음.
9	토목과	사업예산의 집행잔액 과다 발생	○ 우리부서에서는 2019년 사업예산의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거나 확실시될 경우 예산편성부서와 사전협의하여 감추경에 반영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 운용에 노력하였음 -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이 필요하여 집행이 불가능한 「홍제역~홍은사거리 구간 보행네트워크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5억원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감액 처리하였음.

연번	부서명	개선 및 권고사항	개선 및 권고사항 이행결과
10	감사담당관	사업예산 편성액 전액이 불용된 사례	○ 민원지도시스템 운영 초기 시스템 추가 개발사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추가개발사항 미 발생으로 사업예산 집행 후 집행잔액이 일부 발생하였고, ○ 이에 다음연도 세출예산 편성 요구 시 집행잔액 금액을 반영하여 삭감하고 민원지도시스템 유지보수 용역비 사업규모에 맞게 예산 편성함.
10	행정지원과	사업예산 편성액 전액이 불용된 사례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제6항 - 심의회는 제5항의 금액을 결정하려는 때에는 그 결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공청회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기관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회의 결정이 지방공무원의 보수가 인상되는 해의 그 인상을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인상하려는 경우에는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의정비 결정은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연구용역 시 예산은 반드시 편성하여야 함.
10	전산정보과	사업예산 편성액 전액이 불용된 사례	○ 긴급통행로 주차관제시스템, 태양광 모바일 충전벤치, 시설물의 복구비 등 긴급한 상황에 대비한 예비비 성격의 예산으로, 2018년도에는 주택가 이면도로의 긴급통행로에 설치되어 있는 주차관제시스템의 현장 장비 등에 불가피한 사고 및 고장 등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 향후 이러한 상황 등을 예측하여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등 불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운용하겠음.
10	기획예산과	사업예산 편성액 전액이 불용된 사례	○ 소송의 경우 판결 결과, 선고일 등 예측의 어려움이 있으나, 예산의 불용이 확실시 될 경우, 추경예산 편성 기간을 감안하여 잔액을 최소화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음.

연번	부서명	개선 및 권고사항	개선 및 권고사항 이행결과
10	일자리 경제과	사업예산 편성액 전액이 불용된 사례	○ 2019년도 예산편성 시 2018년도 편성액 전액이 불용된 사업은 편성하지 않았으며, 2019년도 예산 중 전액이 불용된 사례는 없었음.
10	지적과	사업예산 편성액 전액이 불용된 사례	○ 공인중개사법 위반 신고포상금의 경우 무등록 중개행위 신고로 인하여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된 경우 지급되는 포상금이며, ○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신고 포상금은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지급되는 포상금으로서, ○ 관계 법률에 의거 국민의 신고에 의거 수시로 지급되는 포상금 제도는 예비적 성격이 강한 예산으로 추경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기는 성격상 맞지 않으며, ○ 과년도 신고건수가 적어(2012, 2016년도 각 1건) 11,000천원에서 2020년 5,500천으로 감액 편성함.
10	북지 정책과	사업예산 편성액 전액이 불용된 사례	○ 2019년 「명예의 전당」 설치 사업예산 미편성
10	어르신 복지과	사업예산 편성액 전액이 불용된 사례	○ 노인복지 인프라 확충 및 지원 - 개선 및 권고사항에 따라 사업변경 계획 등을 수시로 확인하였기에 2019년도에는 편성예산 전액이 불용된 사례가 없었음.
10	건설 관리과	사업예산 편성액 전액이 불용된 사례	○ 불용된 예산은 노점상 정비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용역을 동원하여 강제정비를 해야 할 경우를 대비하여 편성한 예비비 성격의 민간위탁 예산임 - 노점과의 상생 및 소통을 우선시 하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한 결과, 강제정비를 최소화 하였으며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예산 불용이 발생함 ○ 2019년에는 해당예산(민간위탁금)을 전액편성하지 않았음

연번	부서명	개선 및 권고사항	개선 및 권고사항 이행결과
10	토목과	사업예산 편성액 전액이 불용된 사례	○ 우리부서에서는 2019년 사업예산의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거나 확실히 될 경우 예산편성 부서와 사전협의 하여 감추경에 반영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 운용에 노력 하였음 -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이 필요하여 집행이 불가능 한 「홍제역~홍은사거리 구간 보행네트워크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5억원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감액처리 하였음.
10	도 시 재생과	사업예산 편성액 전액이 불용된 사례	○ 지역상권 활성화(불용액 : 4,758천원) - 청년로컬전문가 양성 플랫폼 구축(사무관리비) 잔액 100% · 당초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었으나 시비가 전액 삭감되어 2018년도 하반기에 사업 종료 되었으며 2019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음
10	구의회 사무국	사업예산 편성액 전액이 불용된 사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을 편성하였으나, 보상금 집행사유 가 미발생하여 전액이 불용됨 ○ 위 조례에 따라 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 등 보상금 집행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상심의회 심의결과 에 따라 지급하게 되므로 예산편성이 불가피함 ○ 향후 세출예산 편성요구 시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검토를 통해 예산을 편성하겠음
10	의약과	사업예산 편성액 전액이 불용된 사례	○ 2018년도의 경우 홍보 대상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전액 불용하였으나 2019년도에는 홍보물품을 제작하여 관내 주민 대상 행사 및 보건소 내방 민원에게 에이즈 예방법 과 HIV 신속검사에 대해 홍보를 실시함.

연번	부서명	개선 및 권고사항	개선 및 권고사항 이행결과
11	행정지원과	각종 용역예산 집행에 관한 검토	○ 2019년 용역예산 집행에 대하여 우리 부서 용역은 전기, 소방, 경비 및 건물에 대한 용역으로, 직원이 직접 수행하기에는 전문적 지식 및 장비 등을 필요로 하여 용역 집행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청소용역의 경우, 종사원이 협동조합을 통한 용역업체 고용승계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음. 직접수행 시 청소 종사원 직접 고용 등을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됨. ○ 추후 증가할 수 있는 용역 집행에 대하여는 직원 수행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음.
11	자치행정과	각종 용역예산 집행에 관한 검토	○ 우리부서 대부분의 용역은 청사유지보수(전기, 소방), 설계, 각종 공사용역, 통합증명발급기·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등으로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이며, 이는 주민 편의 뿐만 아니라 안전상의 이유로 반드시 전문용역으로 수행해야 하는 사항으로 직원이 직접 수행하기는 어려움이 있어 당해연도에도 용역으로 편성하여 집행함.
11	일자리경제과	각종 용역예산 집행에 관한 검토	○ 메이커스페이스 공간 조성 전 사전조사에 대한 자체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용역을 추진하였음. 향후 용역사업 시행 시 심도 있는 판단으로 용역을 대체할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음.
11	사회복지과	각종 용역예산 집행에 관한 검토	○ 2019년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신축공사 BF 인증 용역은 장애인시설 BF 인증을 위해 불가피한 용역임.

연번	부서명	개선 및 권고사항	개선 및 권고사항 이행결과
11	어르신 복지과	각종 용역예산 집행에 관한 검토	○ 2018년 창천경로당 승강기 유지보수 용역(연간단가) 시행 외 3건 -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 리모델링 및 신축공사 감리용역 등 이용자의 안전과 관련된 사안으로, 검토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하여 불가피하게 전문기관의 용역으로 추진하였음.
11	여 성 가족과	각종 용역예산 집행에 관한 검토	○ 제2차 서대문구 여성정책 중장기계획 수립 연구용역 - 서대문구는 2012년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최초 지정된 후, 5년간의 성과를 인정받아 2017년 재지정된 2기 여성친화도시임. - 2013년 1차 여성정책중장기계획(2014-2018년)을 연구용역하여 지역특성과 대내외 여성정책을 고려한 정책수립·추진결과, 2017년 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되는 성과를 얻었고, 이에 2018년 제2차 여성정책중장기계획(2019-2023년)을 연구용역 하였음. - 기 시행한 용역은 2022년 3기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준비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며, 향후 수립할 제3차 여성정책 중장기계획은 여성가족부가 지정한 ‘여성친화도시컨설팅트’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 참여단, 사업 추진부서와 협력하여 수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음.
11	문 화 체육과	각종 용역예산 집행에 대한 검토	○ 용역의 대부분은 시설 유지·안전관리(무인경비, 소방, 방역, 전기, 승강기 등) 및 공사용역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문용역으로 수행해야 하는 사항으로 직원이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행사성 업무의 경우 직원이 직접 수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수행하기 어려운 무대임차, 음향·조명 설치 등은 전문용역으로 추진하고 있음 ○ 향후 용역 계약 시 자체 추진 가능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음.

연번	부서명	개선 및 권고사항	개선 및 권고사항 이행결과
11	토목과	각종 용역예산 집행에 관한 검토	○ 우리부서에서는 「건설공사 설계기준 및 단가산출서」를 작성하여 도로보수, 시설물 보수 등의 시설공사에 대해서는 자체설계를 시행하고 있으며, ○ 추정금액 1억 이상의 용역에 대해서는 용역시행 초기 단계에서 용역시행 필요성 및 용역비 산정 적정성 검토와 용역수행 중 리스크 관리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불필요한 예산 사용을 방지하고 설계 품질향상을 위해 일상감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 우리부서에서는 2019년도에 외부전문기관의 진단이 필요한 도로시설물 정밀안전점검용역, 계획수립 및 도면작성 등 전문적인 건설기술이 필요한 가재울로4길 테마거리 조성 실시설계 용역, 민간장비 임차가 필요한 제설용역 3건에 대하여 용역을 시행함
11	푸른 도시과	각종 용역 예산 집행에 관한 검토	○ 공종이 단순하고 규모가 작은 사업은 자체설계를 지향하고, 설계는 단순하나 일부 전문적 기술 및 적정수준의 성과품이 필요한 사업은 도면작성용역 등을 실시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있음. (특히, 市 기술용역타당성 심사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용역의 필요성 등을 사전에 검토) ○ 등산로 관련 실시설계 용역의 경우, 서울특별시 기술감사담당관에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를 거쳐 용역의 필요성 및 용역비 산정의 적정성 등을 심사 후 적정하다는 결과가 나올 경우에만 용역을 시행중임.

연번	부서명	개선 및 권고사항	개선 및 권고사항 이행결과
11	교통관리과	각종 용역예산 집행에 관한 검토	○ 교통관리과 용역예산은 불법주정차 교통통합 관리시스템, 불법주정차 스마트 단속시스템, 불법주정차 CCTV 단속시스템, e자동차 종합정보시스템 등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집행되고 있으며,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전문적인 유지보수 용역을 위해 타당성 있는 업체 선정, 용역계획 수립 및 용역계약 심사 후 매년 계약을 체결하여 월 1회 이상 정기·수시 점검이 실시되고 있음. ○ 시스템의 유지 보수를 위한 전문적인 용역이므로 용역 예산을 매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으나, 그 외에 사업이 추가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용역 여부에 대한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 이행할 예정임.
11	의약과	각종 용역예산 집행에 관한 검토	○ 2018년 재가암환자관리사업 및 암환자 자가건강관리 홍보를 위한 CD를 외부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였으나, 2019년에는 홈페이지, 소식지를 통한 홍보를 실시하고 프로그램 참여 주민과 담당자가 함께 운영과정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프로그램에 활용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함.
12	기획예산과	각종 위원회 운영에 대한 적정성 검토	○ 2020년 위원회 운영 및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 통폐합 및 폐지를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위원회 정비를 권고하였으며,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자문위원회의 비상설화 및 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통합 등을 추진 중에 있음. ○ 다만, 법령 상 강행 규정에 의해 설치되었거나 담당 부서에서 존치를 희망하는 위원회가 다수인 바, 위원회 수의 조정이 큰 폭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실정임.

연번	부서명	개선 및 권고사항	개선 및 권고사항 이행결과
12	기 획 예산과	각종 위원회 운영에 대한 적정성 검토	○ 이러한 상황에서 위원회 수당 증액 시 예산의 과다 책정이 우려되고, 각종 위원회 위원은 지역 사회 봉사 차원에서 활동하는 명예직의 성격이 강하여 수당의 규모와 참여 의사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위원회 수당 기준액은 기존 수준을 유지하였음.
12	사 회 복지과	각종 위원회 운영에 대한 적정성 검토	○ 우리부서는 사회복지기금심의위원회, 생활보장심의 위원회,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장애인복지위원회, 장애인 활동지원자격심의위원회 등 법으로 규정된 위원회를 주로 운영하고 있음.
12	건축과	각종 위원회 운영에 대한 적정성 검토	○ 전문가 추가 위촉 및 예산 신속집행 - 건축심의위원회 전문가 추가 위촉 - 예산 신속 집행하여 올해 예산 전액 집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